

전라남도 도 보

전라남도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2016-5호

2016년 2월 4일 (목)

발행 : 전라남도 / 편집 : 대변인실
홈페이지 www.jeonnam.go.kr



목 차

◆ 규 칙

전라남도 규칙 제3087호	전라남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전라남도 규칙 제3088호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훈 령

전라남도 훈령 제1350호	전라남도 공무원외여행규정 일부개정규정
----------------	----------------------

◆ 고 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6-38호	목포 삼진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6-39호	강진 환경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6-40호	광양 익신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6-4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6-43호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6-44호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6-46호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6-50호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지정번호 변경 고시

◆ 공 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6-101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록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6-116호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6-120호	전라남도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6-126호	전라남도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 시군행정

여수시 고시 제2016-24호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여수시 공고 제2016-213호	여수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여수시 공고 제2016-219호	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순천시 고시 제2016-18호	순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순천시 공고 제2016-143호	순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사전 열람 공고
나주시 고시 제2016-12호	나주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나주시 공고 제2016-131호	나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서류열람 공고
나주시 공고 제2016-132호	나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서류열람 공고
곡성군 고시 제2016-8호	곡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보성군 고시 제2016-3호	보성 군관리계획(교통시설 : 도로)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유관기관

광양청 공고 제2016-8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 등 일괄 공포 공고
광양청 규정 제177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
광양청 규정 제178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규정
광양청 규정 제179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광양청 규정 제180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
광양청 규정 제181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물품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광양청 규정 제182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용차량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광양청 규정 제183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광양청 규정 제184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광양청 규정 제185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규정 폐지규정

전라남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6. 2. 4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규칙 제3087호

전라남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규칙의 별지서식 중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일괄 개정하여 도민의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개정) 전라남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규칙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 중 개정하는 내용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증명하는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번호 미포함)”로 한다.

■ 전라남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별표]

규칙 중 별지서식 개정대상

부서별	규칙명	서식	서식명	개정사항
감사관실	전라남도 주민감사 청구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주민감사청구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3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6호서식	이의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전라남도 감사규칙	별지 제3호서식	문답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FI대회지원담당관	전라남도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관라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사용(변경) 허가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2호서식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사용(변경) 허가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3호서식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라이선스 발급(변경)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4호서식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스포츠주행 허가(변경)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5호서식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견학 허가(변경)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7호서식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사용료 반환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8호서식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사용료 반환 통보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투자유치 담당관	전라남도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7호서식	투자 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8호서식	시설이전 보조금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9호서식	본점이전 보조금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예산담당관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회계 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구입과 지출결의서	주민등록번호 ⇨ 삭제

부서별	규칙명	서식	서식명	개정사항
세정담당관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자 추천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2호서식	모범납세자 선정 심의요구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3호서식	모범납세자 선정 심의의결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4호서식	모범납세자 선정 결과통보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5호서식	모범납세자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중소기업과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별표 제1호서식	지방중소기업 자금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관광과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년 관광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스포츠산업과	전라남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제1호서식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 (전용사용)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4호서식	연습사용허가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5호서식	연 습 권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7호서식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9호서식	출입증 발급대장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식품안전과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농업정책과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검 토 의 견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3호서식	금전 소비 대차 약정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7호서식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 대상자 추천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전라남도 농어업인대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전라남도 농어업인대상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2호서식	추천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부서별	규칙명	서식	서식명	개정사항
농업정책과	전라남도 농어업인대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공적조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5호서식	현지조사 확인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친환경농업과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용자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6호서식	친환경농업 교류협력 및 기술습득 해외연수 대상자 추천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농식품유통과	전라남도 농수축특산물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전라남도 농수축특산물전시판매장 위탁운영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확 인 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축산과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녹색축산육성기금 용자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2호서식	축산기술개발 사업 용자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3호서식	축사화재 지원금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4호서식	사료대금 지급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5호서식	국제교류 협력사업 시장개척사업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6호서식	사료대금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도로교통과	전라남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독 축 장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4호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제액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5호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대장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총무과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주민등록번호 ⇨ 삭제

부서별	규칙명	서식	서식명	개정사항
총무과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3호서식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전라남도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전라남도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 퇴직수당지급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지원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2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추천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3호서식	재정보증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4호서식	기관명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7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관리 기록카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인별인사교류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자치행정과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기금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자치행정국 회계과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1서식	변상금 사전 통지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23호의3서식	공유재산(사용료대부료·변상금매 각대금)분할납부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산림자원 연구소	전라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수강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4호 서식	수강신청접수대장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5호 서식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도로관리 사업소	전라남도 건설공사품질시험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의뢰시험시료접수증(접수자보관 용)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4호서식	조사시험 의뢰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부서별	규칙명	서식	서식명	개정사항
법무통계 담당관	전라남도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별지 제8호서식	조례의 제정개정 폐지 청구서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 번호·외국인등 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9호서식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별지 제10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별지 제12호서식	청구인명부	
		별지 제13호서식	이의신청서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6. 2. 4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규칙 제3088호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전라남도 녹색축산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림수산물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수산물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곤충”이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2조제3호(중전의 제2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중전의 제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으로”를 “「축산법」 제2조 제3호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중전의 제4호) 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에서”를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중전의 제5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축산물 판매업체가 도내 및 다른 시·도 등에 가맹점(직영점)을 개설하여 융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체 소재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은 당해연도 완료로 원칙으로 하되, 시·군의 신청에 의해 전라남도 친환경 농업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대상자는 전업규모 미만의 소규모 축산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보호·육

성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 중 “2과 같다”를 “2와 같고, 농가당 2회에 한하여 지원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녹색축산육성기금 용자한도 및 용자조건(제6조제1항)

구분	수혜 자격별	융자 한도액	상환조건	대출 이율
시설	농업안 법인	- 돼지, 가금류<닭·오리> 20억원 - 그 외 가축곤충 5억원	2년거치 5년 상환	연리 1% 다만, 연체시 10%
	축산물유통업체 판매장 개설자	30억원 (축산물 판매장, 가공장 등 유통시설에 한함)		
	축산기술개발업자	20억원		
운영	농업안법인	2억원	2년거치 일시상환 다만, 입식자금은 2년거치 3년상환	
	축산물유통업체 판매장 개설자	3억원		
	축산기술개발업자	3억원		

※ 축사 시설 자금 m²당 지원단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기준 적용

전라남도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6. 2. 4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훈령 제1350호

전라남도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개정규정

전라남도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수행”을 “수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를 “제1호 이외의 사람이”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를 “사람이”로, “허가부서(이하”를 “허가부서(총무과,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를 “제7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공무원 :”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참여시 :”를 “참여시:”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3일이내”를 “3일 이내”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시군”을 각각 “시·군”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단”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0명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10명이상”을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10명 이상”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위원회와 안전행정국장”을 “위원회(이하 “제1위원회”라 한다)와 자치행정국장”으로, “위원회”를 “위원회(이하 “제2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제1위원회”로, “경제과학국장, 안전행정국장, 관광문화체육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감사관으로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경제과학국장
2. 관광문화체육국장
3. 농림축산식품국장
4. 자치행정국장
5. 감사관

제8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제2위원회”로, “지역경제과장,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해양항만과장, 감사담당으로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역경제과장
2. 사회복지과장
3. 해양항만과장
4. 총무과장
5. 감사총괄팀장

제8조제4항 중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제1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월 2회 개최하며, 임시회”를 “회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서면심사로 의결을”을 “서면심사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이유없이”를 “사유 없이”로 한다.

제10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공무국외여행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여행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공무국외여행자는 여행 기간 중 주관부서와의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 중 “한다”를 “하고, 허가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무국외여행 허가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전부개정 2008. 10. 20, 개정 2015.5.14, 개정 2016.2.4.)

공무국외여행 세부심사항목(제10조제2항 관련)

구 분	내 용
목적 및 필요성 심사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여행이 통합·단일화되었는지 여부 ○ 자료수집 또는 업무협의를 이유로 한 국외여행의 경우 국외여행의 구체적인 필요성이 소명되었는지 여부 ○ 세미나·심포지엄 등 각종 회의에 초청되어 참가하는 경우 그 중요성이 소명되었는지 여부 ○ 사설단체에서 모집하여 여행하는 견학·시찰이나 각종 대회 참관·진지훈련 등의 경우 그 목적이 당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시급성이 인정되었는지 여부
여행목적지 심사	○ 여행목적 달성에 적합한 국가 및 기관의 방문인지 여부(필요 이상으로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지 아니하였는지 확인) ○ 우리나라 공관의 설치 유무 및 여행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감정상태 ○ 여행국의 정치·정세 및 여행자의 신변안전 문제 ○ 여행목적지가 정부에서 지정한 여행제한 국가일 경우 미리 중앙관계 부처와 협의하였는지 여부
여행자 및 인원 심사	○ 여행자의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하고, 귀국 후 상당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자인지 여부(여행자가 부적합할 경우 다른 적합한 자로 교체요구) ○ 여행목적에 맞는 필요한 최소인원인지 여부 ○ 동일목적으로 여행인원이 1회 2명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별 수행업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경우 초청자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 여부 ○ 여행목적과 취지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에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여행은 금지
여행기간 및 시기 심사	○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책정되었는지 여부 · 1회 15일 이내 · 연장: 아주시역(대양주 포함) 4일 이내, 구미 그 밖의 지역 6일 이내 ○ 방문국의 관습·공휴일·연휴기간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였는지 여부 ○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를 피하였는지 여부
여행경비 심사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산출하였는지 여부 ○ 계약 또는 용역에 따른 여행일 경우 그 내용과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 자비에 따른 여행이거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게 경비를 부담지우는 지 여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 ○ 현지활동 교통 수단(항공, 철도, 승용차, 버스 등) 확보 여부 ○ 공무국외여행 중 비상연락체계 수립 여부

전라남도 고시 제2016-38호

목포 삼진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2-84(2012. 3. 27)호, 제2013-219(2013. 7. 19)호, 제2014-385(2014.12.18)호로 고시한 목포 삼진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규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016. 2. 4

전라남도지사

1. 개발계획 변경 승인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목포 삼진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동 1282번지 일원

다. 면 적

○ 217,770.0㎡[공유수면 매립확장 5,493.4㎡]

2. 산업단지의 지정(확장)목적(변경없음)

○ 도시환경저해를 초래하는 기존의 공장들을 산단 내로 수용함으로써 집적 이익도
모 및 도시 내 토지효율성 제고

○ 선박건조를 위한 조선소 건설, 조선산업클러스터 구축 및 지역경제 발전 도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 목포시장, 중소기업진흥공단, 목포조선공업(주)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가. 개발기간(변경-목포조선공업 부지확장에 한함)

○ 기정 : 1995. 12 ~ 2015. 12 (공유수면매립 : 2012~2015)

○ 변경 : 1995. 12 ~ 2017. 12 (공유수면매립 : 2012~2017)

나. 개발방법(변경없음)

○ 공영개발, 민간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 금속가공 제품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	비고
합 계	217,770.0	목포조선공업(주)
산업시설용지	167,346.4	
공장용지	167,346.4	
지원시설용지	10,788.9	
공동시설부지	9,619.7	
생활체육시설부지	361.8	
가압장	807.4	
녹지용지	13,975.1	
경관녹지	10,214.5	
공원녹지	3,760.6	
공공시설용지	25,659.6	
도 로	24,013.4	
주차장	1,646.2	

나.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1) 도 로

○ 도로 총괄표(변경없음)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5	1,297	24,013.4	3	946	19,481.4	-	-	-	2	351	4,532.0
중로	5	1,297	24,013.4	3	946	19,481.4	-	-	-	2	351	4,532.0

○ 도로결정 조서(변경없음)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점	종점
중로	1	14	20	98	2,149.6	지구계	공장부지 입구
중로	1	43	20	479	9,765.0	중1-14	지구계
중로	1	27	20	369	7,566.8	중1-14	지구계
중로	3	37	12	213	2,716.0	중1-43	해안선
중로	3	38	12	138	1,816.0	중1-27	해안선

(2)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 용수공급량

(단위 : m³)

구분	계	공업용수	생활용수	비고
사업지구	963	849	114	

○ 용수공급원

구 분	공 급	비 고
공급원	목포 지방상수도	963t/일, 200m/m

(3) 오·폐수처리(변경없음)

- 오·오수 분류식으로 계획처리, 우수는 주변환경을 고려한 관로설치로 자연 유하 배제
- 오수는 사업지구내 가압장을 설치하여 산정농공단지 오·폐수종말 처리장에서 처리후 방류
- 산정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부지내에 유량조종조(1,000m³) 설치하여 오·폐수량 조정
- 연흥산업 차집지점에서 폐수처리장까지 오·폐수관로 확충 (L=250m, D=450mm→800mm)

(단위 : m³/일)

구분	계	오수량	폐수량	비고
계	199.924	111.72	88.204	
공 장 용 지	195.924	107.72	88.204	
지원시설용지	4	4	-	

(4) 공원, 녹지시설(변경없음)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m²)	최초 결정일	비 고
계				13,975.1	-	
기정	녹지	경관녹지	목포시 연산동 1282장 일원	498.0	-	
기정	녹지	완충녹지	목포시 연산동 1283-1잡 일원	9,411.5		
기정	녹지	완충녹지	목포시 연산동 1287장 일원	305		
기정	공원	근린공원	목포시 연산동 1298장 일원	3,760.6		

(5)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구 분	전력사용량(MWh)	최대부하(kW)
계	13,939	2,540
공 장 용 지	13,383	2,451
지원시설용지	556	89

(6) 통신시설(변경없음)

○ 여유율 30%를 고려하여 100회선을 한국통신공사 목포 지사에서 전량 공급

구분	종사인구(인)	산정기준	총소요대수(회선)	비고
계	926		100	
공장용	896	1대/10인	90	
지원시설용	30	1대/3인	10	

(7) 주차장 계획(변경없음)

구 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계			1,646.2	-	
기정	노 외 주차장	목포시 연산동 1284장 일원	823.1	-	
기정	노 외 주차장	목포시 연산동 1282장 일원	823.1	-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지원계획(변경없음)

가. 진입도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점	종점	관리처분 사 항
중로	1	14	20	416	8,467	대로1-6	산 단 지구계	목포시에 귀 속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성명(변경없음) : 해당없음.

II.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목포 삼진일반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 목포시장, 중소기업진흥공단, 목포조선공업(주)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도시환경저해를 초래하는 기존의 공장들을 산단 내로 수용함으로써 집적 이익 도모 및 도시 내 토지효율성 제고

○ 선박건조를 위한 조선소 건설, 조선산업클러스터 구축 및 지역경제 발전 도모

나. 사업개요(변경없음)

(1) 개발방법(변경없음)

○ 공영개발, 민간개발

(2)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 금속가공 제품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3)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단위: m²)

구 분	계	장	도	공원	잡	공유수면 (매립)
면 적	217,770.0	173,440.4	25,707.7	3,760.6	9,367.9	5,493.4

(4)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4-1)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m ²)			비고
	전 체	기 준공	공유수면 매립	
합 계	217,770.0	212,276.6	5,493.4	목포조선공업(주)
산업시설용지	167,346.4	161,853.0	5,493.4	
공장용지	167,346.4	161,853.0	5,493.4	
지원시설용지	10,788.9	10,788.9	-	
공동시설부지	9,619.7	9,619.7	-	
생활체육시설부지	361.8	361.8	-	
가압장	807.4	807.4	-	
녹지용지	13,975.1	13,975.1	-	
경관녹지	10,214.5	10,214.5	-	
공원녹지	3,760.6	3,760.6	-	
공공시설용지	25,659.6	25,659.6	-	
도 로	24,013.4	24,013.4	-	
주차장	1,646.2	1,646.2	-	

(4-2)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도로

- 도로 총괄표(변경없음)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5	1,297	24,013.4	3	946	19,481.4	-	-	-	2	351	4,532.0
중로	5	1,297	24,013.4	3	946	19,481.4	-	-	-	2	351	4,532.0

- 도로결정 조서(변경없음)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점	종점
중로	1	14	20	98	2,149.6	지구계	공장부지 입구
중로	1	43	20	479	9,765.0	중1-14	지구계
중로	1	27	20	369	7,566.8	중1-14	지구계
중로	3	37	12	213	2,716.0	중1-43	해안선
중로	3	38	12	138	1,816.0	중1-27	해안선

○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 용수공급량

(단위 : m³)

구분	계	공업용수	생활용수	비고
사업지구	963	849	114	

- 용수공급원

구 분	공 급	비 고
공급원	목포 지방상수도	963t/일, 200m/m

○ 오·폐수처리(변경없음)

(단위 : m³/일)

구분	계	오수량	폐수량	비고
계	199.924	111.72	88.204	
공 장 용 지	195.924	107.72	88.204	
지원시설용지	4	4	-	

○ 공원, 녹지시설(변경없음)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계				13,975.1	-	
기정	녹지	경관녹지	목포시 연산동 1282장 일원	498.0	-	
기정	녹지	완충녹지	목포시 연산동 1283-1잡 일원	9,411.5		
기정	녹지	완충녹지	목포시 연산동 1287장 일원	305		
기정	공원	근린공원	목포시 연산동 1298장 일원	3,760.6		

○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구 분	전력사용량(MWh)	최대부하(kW)
계	13,939	2,540
공 장 용 지	13,383	2,451
지원시설용지	556	89

○ 통신시설(변경없음)

- 여유율 30%를 고려하여 100회선을 한국통신공사 목포 지사에서 전량 공급

구분	종사인구(인)	산정기준	총소요대수(회선)	비고
계	926		100	
공장용	896	1대/10인	90	
지원시설용	30	1대/3인	10	

○ 주차장 계획(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계				1,646.2	-	
기정		노 외 주차장	목포시 연산동 1284장 일원	823.1	-	
기정		노 외 주차장	목포시 연산동 1282장 일원	823.1	-	

○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지원계획(변경없음)

- 진입도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점	종점	관리처분 사 항
중로	1	14	20	416	8,467	대로1-6	산 단 지구계	목포시에 귀 속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동 1282번지 일원

나. 면 적(변경없음)

○ 217,770.0㎡[공유수면 매립확장 : 5,493.4㎡]

- 기 준공 212,276.6㎡

- 공유수면 매립 5,493.4㎡

5. 사업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가. 개발기간(변경-목포조선공업 부지확장에 한함)

○ 기 정 : 1995. 12 ~ 2015. 12 (공유수면매립 : 2012~2015)

○ 변 경 : 1995. 12 ~ 2017. 12 (공유수면매립 : 2012~2017)

나. 착공(목포조선공업 부지확장)

○ 산업단지계획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변경없음)

다. 준공예정일(목포조선공업 부지확장)

○ 기 정 : 2013년 12월 30일

○ 변 경 : 2017년 12월 31일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 목포시 용도지역 총괄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계		112,490,000.0	100.00	
주거지역	소 계	14,258,439.0	12.68	
	제1종전용주거지역	29,041.3	0.03	
	제2종전용주거지역	47,876.1	0.04	
	제1종일반주거지역	7,052,311.9	6.27	
	제2종일반주거지역	4,873,056.4	4.33	
	제3종일반주거지역	1,005,771.8	0.89	
	준주거지역	1,250,381.5	1.11	
상업지역	소 계	1,975,547.0	1.76	
	중심상업지역	444,034.0	0.39	
	일반상업지역	1,531,513.0	1.36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공업지역	소 계	8,322,682.6	7.40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5,585,419.0	4.97	
	준공업지역	2,737,263.6	2.43	
녹지지역	소 계	30,257,064.4	26.90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520,119.3	0.46	
	자연녹지지역	29,736,945.1	26.44	
관리지역	소 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미지정		57,676,267	51.27	

(2) 목포 삼진일반산업단지 용도지역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217,770.0	100.0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217,770.0	100.0	

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번호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1	20	삼진지구 단위계획구역	목포시 연산동 1282번지 일원	217,770.0	

○ 결정 사유서

번호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결정(변경) 사유	비고
1	20	삼진지구 단위계획구역	목포시 연산동 1282번지 일원	목포 삼진일반산업단지 공유수면매립계획 축소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 교통시설(변경없음)

○ 도로 결정 총괄조서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5	1,713.0	32,480.4	3	1,362	27,948.4	-	-	-	2	351	4,532.0
중로	5	1,713.0	32,480.4	3	1,362	27,948.4	-	-	-	2	351	4,532.0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연장 (m)	면적 (㎡)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5개 노선			1,713.0	32,480.4				-	-	
기정	중로	1	14	20	514.0	10,616.6	지구계	공장 입구	도로	-	-	
기정	중로	1	43	20	479.0	9,765.0	중로1-14	지구계	도로	-	-	
기정	중로	1	27	20	369.0	7,566.8	중로1-14	지구계	도로	-	-	
기정	중로	3	38	12	138.0	1,816.0	중로1-27	해안선	도로	-	-	
기정	중로	3	37	12	213.0	2,716.0	중로1-43	해안선	도로	-	-	

(2) 공간시설(변경없음)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2	녹지	완충 녹지	목포시 연산동 1283-1잡 일원	5,411	-	5,411		삼진일반 산업단지
기정	13	녹지	완충 녹지	목포시 연산동 1299잡 일원	3,992	-	3,992		삼진일반 산업단지
기정	14	녹지	완충 녹지	목포시 연산동 1287장 일원	305	-	305		삼진일반 산업단지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9	삼진	근린 공원	목포시 연산동 1298장 일원	3,830	-	3,830		삼진일반 산업단지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1) 가구 및 획지계획 총괄(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217,770.0	목포시 연산동 일원	217,770.0	
-	소계		167,346.4		167,346.4	
	A	1	138,477.2	목포시 연산동 1282장 일원	138,477.2	공장용지
		2	26,434.1	목포시 연산동 1297장 일원	26,434.1	공장용지
		3	2,435.1	목포시 연산동 1280-12장 일원	2,435.1	공장용지
-	소계		9,619.7		9,619.7	
	B	1	7,173.7	목포시 연산동 1300장 일원	7,173.7	공동시설
		2	314.6	목포시 연산동 1284장	314.6	공동시설
		3	389.5	목포시 연산동 1284장	389.5	공동시설
		4	1,380.1	목포시 연산동 1282장	1,380.1	공동시설
-	C		807.4	목포시 연산동 1289장	807.4	가압장
-	D		361.8	목포시 연산동 1284장	361.8	생활체육시설
-	E		3,760.6	목포시 연산동 1298장	3,760.6	공원
-	소계		10,214.5		10,214.5	
	F	1	1,214.5	목포시 연산동 1290잡	1,214.5	녹지
		2	801.2	목포시 연산동 1302잡	801.2	녹지
		3	796.9	목포시 연산동 1288잡	796.9	녹지
		4	2,110.3	목포시 연산동 1283-1잡	2,110.3	녹지
		5	498	목포시 연산동 1282장	498	녹지
		6	2,179.8	목포시 연산동 1299잡	2,179.8	녹지
		7	2,308.8	목포시 연산동 1283-2잡	2,308.8	녹지
		8	305	목포시 연산동 1287장	305	녹지
-	소계		1,646.2		1,646.2	
	G		823.1	목포시 연산동 1284장	823.1	주차장
			823.1	목포시 연산동 1282장	823.1	주차장
-	H		24,013.4	목포시 연산동 1303도	24,013.4	도로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	A	용도	◦ 권장용도 : 건축법 제2조 2항 제17호의 공장 ◦ 불허용도 : 권장용도 외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이하	
		높이	◦ 4층 이하	
		배치	◦ 도면참조	
		형태	-	
		색채	◦지붕 : 1차색을 지양하고 2,3차색 사용 권장(연한 녹색 및 파란색 계열) ◦벽면: 지붕색과 명도차를 두어 2, 3차색 사용 권장 ◦건축물 용도에 따른 동일색 사용 지양	
		건축선	◦건축 한계선 : 획지경계선에서 1m이하 이격하여 지정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및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제1종지구 단
위계획 결정(변경)도 : 관련도면 게재생략

7. 산업단지 지정 지형도면고시도 : 관련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률』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8. 관련도서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목포시 일자리경제과(061-270-335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생략)

전라남도 고시 제2016-39호

강진 환경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2-83호(2012. 3. 27)로 변경 고시한 강진 환경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의 규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2. 4

전라남도지사

I. 개발계획 변경 승인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변경)

- 명칭 : 강진 환경산업단지
- 위치 : 강진군 성전면 명산리, 송학리 일원
- 면적 : 기정 - 657,353㎡
 변경 - 656,854㎡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지역산업기반 육성으로 1차산업 위주에서 탈피하는 산업구조의 변화 도모
- 지역산업기반과 연계한 산업단지 조기개발을 통해 전남지역의 부족한 산업용지난 해소
- 지역산업·산업활동 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미래 지향적인 신성장동력(환경, 신재생에너지)의 전략산업 유치로 지역발전 극대화 도모
-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와 연계한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으로 특화 유도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강진군수, 전남개발공사 사장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

- 개발기간 : 기정 - 2008년 ~ 2015년
 변경 - 2008년 ~ 2016년
- 개발방법 : 공영개발(강진군수, 전남개발공사 사장)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

가. 주요유치업종 (변경)

○ 기 정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기타운송장비 제조업(C31),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35), 환경정화 및 복원업(E39),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E38)

○ 변 경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35),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E38), 식료품 제조업(C10), 음료제조업(C11),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업종생략(산업시설 면적의 30% 이내, 제한업종:섬유제품 제조업(C13), 의복·의복악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C1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C19))

나.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산업시설용지		410,085	410,697	100.0	100.0	
	조선기자재 산업	98,515	-	24.0	-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98,515	-	24.0	-	
C31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환경 산업		143,959	111,824	35.1	27.2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39,374	111,463	9.6	27.2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D35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8,076		14.2		
E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46,509	-	11.3	-	
신재생에너지 산업		167,611	98,515	40.9	24.0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54,338	98,515	13.3	24.0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45,804		11.2		
E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67,469		16.4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음식료품 산업		-	32,422	-	7.9	
C10	식료품 제조업	-	32,422	-	7.9	
C11	음료 제조업					
음식료품 및 펄프, 종이제품 관련 산업		-	31,108	-	7.6	
C10	식료품 제조업	-	31,108	-	7.6	
C11	음료 제조업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음식료품 및 창고, 운송관련 산업		-	22,380	-	5.4	
C10	식료품 제조업	-	22,380	-	5.4	
C11	음료 제조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업종 생략		-	114,809	-	27.9	
산업시설 면적의 30% 이내		-	114,809	-	27.9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총계	657,353	감) 499	656,854	100.0	
산업용지	410,085	증) 612	410,697	62.5	
조선기자재산업	98,515	감) 98,515	-	-	
환경산업	143,959	감) 32,496	111,463	17.0	
신재생에너지산업	167,611	감) 69,096	98,515	15.0	
식음료 및 물류, 종이관련 산업	-	증) 85,910	85,910	13.1	
업 종 생 략	-	증) 114,809	114,809	17.4	
지원시설용지	60,371	-	60,371	9.1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39,670	-	39,670	6.0	
지원시설용지	20,701	-	20,701	3.1	
공공시설용지	186,897	감) 1,111	185,786	28.4	
공원/녹지	80,697	감) 955	79,742	12.1	
공원	6,188	-	6,188	0.9	
완충녹지	70,286	감) 430	69,856	10.6	
공공공지	4,223	감) 525	3,698	0.6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보행자도로	342	-	342	0.1	
도로	81,513	감) 3	81,510	12.4	
주차장	4,651	감) 153	4,498	0.7	
수질오염방지시설	3,900	-	3,900	0.6	
전기공급설비	3,849	-	3,849	0.6	
유수지	10,300	-	10,300	1.6	
수도공급설비	1,645	-	1,645	0.3	

나. 기반시설계획 (변경)

1) 교통시설계획 (변경)

가) 도로 계획 (변경)

○ 도로총괄표

구 분		류별	폭원 (m)	기 정			변 경			비고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 계		-	-	15	5,246	81,855	14	5,221	81,852	
일반 도로	중로	계	-	9	4,978	79,372	9	4,978	79,607	
		2류	15~19	7	4,515	73,517	7	4,515	73,752	
		3류	12	2	463	5,855	2	463	5,855	
일반 도로 / 특수 도로	소로	계	-	6	268	2,483	5	243	2,245	
		1류	10	1	34	342	1	34	342	
		2류	8	5	234	2,141	4	209	1,903	

※ 주 : 도로면적 합계는 가각부를 포함한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51	19	보조 간선	1,119	서측구역계 (송학리 715-5)	중로2-56 (명산리산139-1)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중로	2	52	15	집산 도로	1,099	중로2-51 (송학리 717-1)	중로2-55 (명산리 650-1)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53	15	집산 도로	170	중로2-51 (송학리 산3)	중로2-52 (송학리 69)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중로	2	54	15	집산 도로	291	중로2-51 (송학리 233)	중로2-52 (명산리산142-2)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중로	2	55	15	집산 도로	624	중로2-51 (명산리산139-1)	소로2-354 (명산리 730)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중로	2	56	15	집산 도로	932	중로2-51 (송학리 산5)	중로2-51 (명산리산139-1)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중로	2	57	15	집산 도로	280	중로2-51 (송학리 234)	중로2-56 (송학리802-21)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중로	3	201	12	국지 도로	262	중로2-52 (송학리 720-2)	중로2-52 (송학리 716-5)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중로	3	202	12	국지 도로	201	중로2-52 (송학리 720-3)	중로2-52 (송학리 69)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소로	1	91	10	보행자 도로	34	중로3-201 (송학리 718)	북측구역계 (송학리718-7)	특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소로	2	351	8	국지 도로	27	중로2-51 (송학리 211-3)	남측구역계 (송학리 689)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소로	2	352	8	국지 도로	67	중로2-52 (송학리 산1-4)	북측구역계 (명산리산142-5)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소로	2	353	8	국지 도로	58	중로2-55 (명산리 산148)	유수지 (명산리산148)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폐지	소로	2	354	8	국지 도로	25	중로2-55 (명산리 산148)	동측구역계 (명산리산148)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소로	2	355	8	국지 도로	57	중로2-56 (송학리 152-2)	수도공급설비 (송학리 151)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나) 주차장계획(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4,651	감) 153	4,498		
변경	8	주차장	중로2-57호선변 (송학리 235)	3,228	감) 153	3,075	전고211호 11.07.13	일반공업지역 (129면)
기정	9	주차장	중로3-202호선변 (송학리 720-5)	1,423	-	1,423	전고211호 11.07.13	일반공업지역 (57면)

2) 공원·녹지계획(변경)

가) 공원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6,188	-	6,188		
기정	2	산단2공원	소공원	중로3-201호선변 (송학리 720-1)	2,752	-	2,752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3	산단3공원	소공원	중로3-202호선변 (송학리 721)	3,436	-	3,436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나) 녹지계획(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70,286	감) 430	69,856		
기정	8	녹지	완충녹지	하천변, 서측구역계 (송학리 714)	8,073	-	8,073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9	녹지	완충녹지	하천변 (송학리 718-7)	1,312	-	1,312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10	녹지	완충녹지	중로2-51호선변 (송학리 719-1)	1,423	-	1,423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11	녹지	완충녹지	중로2-51호선변 (송학리 717-3)	9,177	-	9,177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변경	12	녹지	완충녹지	하천변 (송학리 212-9)	2,733	감) 12	2,721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변경	13	녹지	완충녹지	하천변 (명산리 468-1)	14,852	증)19,542	34,394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폐지	14	녹지	완충녹지	동측구역계 (명산리 686)	19,960	감) 19,960	-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15	녹지	완충녹지	남측구역계 (송학리 155)	12,756	-	12,756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다) 공공공지(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4,223	감) 525	3,698		
기정	3	공공공지	동측구역계 (명산리 1465-2)	1,205	-	1,205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변경	4	공공공지	하천변 (명산리 산142-4)	1,018	감) 67	951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폐지	5	공공공지	중로 2-54호선변 (송학리 176)	2,000	감) 2,000	-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신설	6	공공공지	(송학리 산4)	-	증) 537	537		일반 공업지역
신설	7	공공공지	(송학리 234)	-	증) 537	537		일반 공업지역
신설	8	공공공지	(송학리 171-2)	-	증) 468	468		일반 공업지역

3) 유통 및 공급시설계획(변경없음)

가) 수도공급설비(배수지)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1,645	-	1,645		
기정	7	수도공급설비 (배수지)	남측구역계 (송학리 151)	1,645	-	1,645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나)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3,849	-	3,849		
기정	4	전기공급설비	중로2-55호선변 (명산리 산147-1)	3,849	-	3,849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4) 방재시설계획(변경없음)

가) 유수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10,300	-	10,300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북측구역계 (명산리 466)	10,300	-	10,300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5) 환경기초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3,900	-	3,900		
기정	2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중로 2-55호선변 (명산리 728-1)	3,900	-	3,900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다. 공급처리시설계획 (변경)

1) 용수공급계획 (변경)

구 분	용 량(㎡/일)			공급수원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405	감) 146	3,259	-	
공업용수	3,043	감) 141	2,902	장흥댐 호소수	
생활용수	362	감) 5	357	장흥댐 호소수	

2) 오·폐수처리계획 (변경)

구 분	용수량 (㎡/일)			총오수량 (㎡/일)			오수량 (㎡/일)			지하수유입량 (㎡/일)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416	감) 131	3,285	1,316	감) 614	702	1,196	감) 558	638	120	감) 55	65
공업폐수	3,043	감) 141	2,902	947	감) 614	323	861	감) 568	293	86	감) 56	30
생활오수	312	감) 10	302	309	증) 10	319	281	증) 9	290	28	증) 1	29
송학마을생활오수	61	-	61	60	-	60	54	증) 1	55	6	-	6

주) 생활용수량은 소화용수(50㎡/일)를 제외한 수치임.

3) 전력·통신공급계획 (변경없음)

구 분	수 요 량	공급계획	비고
전력(kVA/년)	26,394	지구내 변전소	
통신(회선)	1,451	KT 강진지점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변경없음)

가. 진입도로 (변경없음)

구 분	폭원(m)	길이(m)	비고
본선	19.0	732.0	-
국도2호선 연결로	6.0	1,300.0	통로암거포함(35.0m×10.5m)
교량	19.0	16.0	
군도 연결로	8.0	405.0	

나. 용수공급시설 (변경없음)

구 분	내 용
송수관로	D250mm, L=1,990m
배수지	V=1,710m ³ /일

다. 오·폐수처리시설(변경없음)

구 분	소요면적(m ²)	소요부지규격		비 고
오·폐수처리시설	3,900	BXL(7:3)	BXL(6:4)	Q = 1,316m ³ /일
		94m×40m	76m×50m	

8.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 국비 및 사업시행자 자체자금을 조달하여 개발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게재 생략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강진군 미래산업과 (061-430-309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 열람합니다.

II.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강진 환경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성명 : 강진군수, 전남개발공사 사장

○ 주소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108-1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후광대로 242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지역산업기반 육성으로 1차산업 위주에서 탈피하는 산업구조의 변화 도모

○ 지역산업기반과 연계한 산업단지 조기개발을 통해 전남지역의 부족한 산업용지
난 해소○ 지역산업·산업활동 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지향적인 신성장동력(환경, 신재생에너지)의 전략산업 유치로 지역발전 극
대화 도모

○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와 연계한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으로 특화 유도

4.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치 : 강진군 성전면 명산리, 송학리 일원

○ 면적 : 기정 - 657,353㎡

변경 - 656,854㎡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

○ 개발방법 : 공영개발(강진군수, 전남개발공사 사장)

○ 개발기간 : 기정 - 2008년~2015년

변경 - 2008년~2016년

6.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총계	657,353	감) 499	656,854	100.0	
산업용지	410,085	증) 612	410,697	62.5	
조선기자재산업	98,515	감) 98,515	-	-	
환경산업	143,959	감) 32,496	111,463	17.0	
신재생에너지산업	167,611	감) 69,096	98,515	15.0	
식음료 및 물류, 종이관련 산업	-	증) 85,910	85,910	13.1	
업 종 생 략	-	증) 114,809	114,809	17.4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지원시설용지	60,371	-	60,371	9.1	
환경산업융합기술지원센터	39,670	-	39,670	6.0	
지원시설용지	20,701	-	20,701	3.1	
공공시설용지	186,897	감) 1,111	185,786	28.4	
공원·녹지	80,697	감) 955	79,742	12.1	
공원	6,188	-	6,188	0.9	
완충녹지	70,286	감) 430	69,856	10.6	
공공공지	4,223	감) 525	3,698	0.6	
보행자도로	342	-	342	0.1	
도로	81,513	감) 3	81,510	12.4	
주차장	4,651	감) 153	4,498	0.7	
수질오염방지시설	3,900	-	3,900	0.6	
전기공급설비	3,849	-	3,849	0.6	
유수지	10,300	-	10,300	1.6	
수도공급설비	1,645	-	1,645	0.3	

7.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

1) 강진군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 · 감	변 경		
합 계	563,223,000 (55,952,981)	-	563,223,000 (62,978,318)	100.0	() : 해면
도시지역	27,041,759 (1,700,118)	감) 499	27,041,260 (1,700,118)	4.8	() : 해면
주거지역	3,876,552	-	3,876,552	0.7	
상업지역	604,812	-	604,812	0.1	
공업지역	1,418,230 (60,350)	감) 499	1,417,731 (60,350)	0.3	() : 해면
일반공업지역	1,196,998	감) 499	1,196,499	0.2	
준공업지역	221,232 (60,350)	-	221,232 (60,350)	0.1	() : 해면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 · 감	변 경		
녹지지역	19,856,327 (353,930)	-	19,856,327 (353,930)	3.5	() : 해면
미지정	1,285,838 (1,285,838)	-	1,285,838 (1,285,838)	0.2	() : 해면
관리지역	114,269,992	-	114,269,992	20.3	
보전관리지역	47,667,011	-	47,667,011	8.5	
생산물관리지역	18,401,958	-	18,401,958	3.3	
계획관리지역	48,201,023	-	48,201,023	8.5	
미세분관리지역	-	-	-	-	
농림지역	312,832,501	증) 499	312,833,000	55.5	
자연환경보전지역	109,078,748 (61,253,412)	-	109,078,748 (61,253,412)	19.4	() : 해면

※주 : 기정은 전라남도고시 제2015-31호(2015.02.23) 강진 군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변경 결정 지형도면고시 사항임

주 : 용도지역결정변경은 강진 환경산업단지에 한함

2) 강진 환경산업단지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증 · 감	변 경		
합계	657,353	-	656,854	100.0	
도시지역	657,353	감) 499	656,854	100.0	
공업지역	657,353	감) 499	656,854	100.0	
일반공업지역	-	감) 499	656,854	100.0	

3)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	강진군 성전면 송학리 716-9번지 일원	일반공업 지역	농림지역	499	80	- 사업지구 경계부 분할 측량 반영 (증 235㎡) - 실제 제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하천 부지 제척 (감 734㎡)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변경)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1	강진환경산업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전남 강진군 성전면 명산리, 송학리 일원	657,353	감) 499	656,854	전고241호 09.05.20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1	전남 강진군 성전면 명산리, 송학리 일원	656,854	• 사업지구 경계부 분할측량 반영(증 235㎡) • 실제 제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하천부지 제척(감 734㎡)

다.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변경)

1) 교통시설 (변경)

가) 도로

○ 도로총괄표

구 분		류별	폭원 (m)	기 정			변 경			비고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 계		-	-	15	5,246	81,855	14	5,221	81,852	
일반 도로	중로	계	-	9	4,978	79,372	9	4,978	79,607	
		2류	15~19	7	4,515	73,517	7	4,515	73,752	
		3류	12	2	463	5,855	2	463	5,855	
일반 도로 / 특수 도로	소로	계	-	6	268	2,483	5	243	2,245	
		1류	10	1	34	342	1	34	342	
		2류	8	5	234	2,141	4	209	1,903	

※ 주 : 도로면적 합계는 가각부를 포함한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51	19	보조 간선	1,119	서측구역계 (송학리 715-5)	중로2-56 (명산리산139-1)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중로	2	52	15	집산 도로	1,099	중로2-51 (송학리 717-1)	중로2-55 (명산리 650-1)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중로	2	53	15	집산 도로	170	중로2-51 (송학리 산3)	중로2-52 (송학리 69)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중로	2	54	15	집산 도로	291	중로2-51 (송학리 233)	중로2-52 (명산리산142-2)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중로	2	55	15	집산 도로	624	중로2-51 (명산리산139-1)	소로2-354 (명산리 730)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중로	2	56	15	집산 도로	932	중로2-51 (송학리 산5)	중로2-51 (명산리산139-1)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중로	2	57	15	집산 도로	280	중로2-51 (송학리 234)	중로2-56 (송학리802-21)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중로	3	201	12	국지 도로	262	중로2-52 (송학리 720-2)	중로2-52 (송학리 716-5)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중로	3	202	12	국지 도로	201	중로2-52 (송학리 720-3)	중로2-52 (송학리 69)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소로	1	91	10	보행자 도로	34	중로3-201 (송학리 718)	북측구역계 (송학리718-7)	특수도 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소로	2	351	8	국지 도로	27	중로2-51 (송학리 211-3)	남측구역계 (송학리 689)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소로	2	352	8	국지 도로	67	중로2-52 (송학리 산1-4)	북측구역계 (명산리산142-5)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소로	2	353	8	국지 도로	58	중로2-55 (명산리 산148)	유수지 (명산리산148)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폐지	소로	2	354	8	국지 도로	25	중로2-55 (명산리 산148)	동측구역계 (명산리산148)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소로	2	355	8	국지 도로	57	중로2-56 (송학리 152-2)	수도공급설비 (송학리 151)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소로2-354	-	• 폐지 - B=8m, L=25m	• 마을 연결도로로 계획하였으나, 진입이 어려워 폐지

나) 주차장계획 (변경)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4,651	감) 153	4,498		
변경	8	주차장	중로2-57호선변 (송학리 235)	3,228	감) 153	3,075	전고211호 11.07.13	일반공업지역 (129면)
기정	9	주차장	중로3-202호선변 (송학리 720-5)	1,423	-	1,423	전고211호 11.07.13	일반공업지역 (57면)

2) 공원·녹지계획 (변경)

가) 공원계획 (변경없음)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6,188	-	6,188		
기정	2	산단2공원	소공원	중로3-201호선변 (송학리 720-1)	2,752	-	2,752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3	산단3공원	소공원	중로3-202호선변 (송학리 721)	3,436	-	3,436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나) 녹지계획 (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70,286	감) 430	69,856		
기정	8	녹지	완충녹지	하천변, 서측구역계 (송학리 714)	8,073	-	8,073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9	녹지	완충녹지	하천변 (송학리 718-7)	1,312	-	1,312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10	녹지	완충녹지	중로2-51호선변 (송학리 719-1)	1,423	-	1,423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11	녹지	완충녹지	중로2-51호선변 (송학리 717-3)	9,177	-	9,177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변경	12	녹지	완충녹지	하천변 (송학리 212-9)	2,733	감) 12	2,721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변경	13	녹지	완충녹지	하천변 (명산리 468-1)	14,852	증) 19,542	34,394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폐지	14	녹지	완충녹지	동측구역계 (명산리 686)	19,960	감) 19,960	-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15	녹지	완충녹지	남측구역계 (송학리 155)	12,756	-	12,756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2	완충녹지	• 면적 변경(감 12㎡)	• 실제 제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하천부지 제척
13	완충녹지	• 면적 변경 (증 19,542㎡)	• 제14호 완충녹지 폐지로 면적 변경(증 19,960㎡) • 소로2-354 폐지로 면적 변경(증 238㎡) • 실제 제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하천부지 제척 (감 656㎡)
14	완충녹지	• 폐지(감 19,960㎡)	• 소로2-354 폐지로 제13호 완충녹지로 합병

다) 공공공지 (변경)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4,223	감) 525	3,698		
기정	3	공공공지	동측구역계 (명산리 1465-2)	1,205	-	1,205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변경	4	공공공지	하천변 (명산리 산142-4)	1,018	감) 67	951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폐지	5	공공공지	중로 2-54호선변 (송학리 176)	2,000	감) 2,000	-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신설	6	공공공지	(송학리 산4)	-	증) 537	537		일반 공업지역
신설	7	공공공지	(송학리 234)	-	증) 537	537		일반 공업지역
신설	8	공공공지	(송학리 171-2)	-	증) 468	468		일반 공업지역

○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4	공공공지	• 면적변경(감 67㎡)	• 실제 제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하천부지 제척
-	공공공지	• 폐지 2,000㎡	• 사면으로 이루어져 이용효율이 낮은 공공공지 폐지
6	공공공지	• 신설 537㎡	• 환경관련 산업시설 전면부에 재해대책 및 경관의 유지를 위해 공공공지 신설
7	공공공지	• 신설 537㎡	• 환경관련 산업시설 전면부에 재해대책 및 경관의 유지를 위해 공공공지 신설
8	공공공지	• 신설 468㎡	• 환경관련 산업시설 전면부에 재해대책 및 경관의 유지를 위해 공공공지 신설

3) 유통 및 공급시설계획 (변경없음)

가) 수도공급설비 (변경없음)

○ 수도공급설비(배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1,645	-	1,645		
기정	7	수도공급설비 (배수지)	남측구역계 (송학리 151)	1,645	-	1,645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나) 전기공급설비 (변경없음)

○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3,849	-	3,849		
기정	4	전기공급설비	중로2-55호선변 (명산리 산147-1)	3,849	-	3,849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4) 방재시설계획 (변경없음)

가) 유수지 (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10,300	-	10,300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북측구역계 (명산리 466)	10,300	-	10,300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5) 환경기초시설계획 (변경없음)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없음)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3,900	-	3,900		
기정	2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중로 2-55호선변 (명산리 728-1)	3,900	-	3,900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1) 산업시설용지 (변경)

기 정						변 경					
도면 번호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도면 번호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위 치	면적(㎡)	
합 계		410,085		410,085		합 계		410,697		410,697	
A (산업시설용지) [A1 ~ A15]	A1	48,212	1	48,212	산업시설용지	A (산업시설 용지) [A1 ~ A13]	A1	48,212	1	48,212	산업시설용지
	A2	50,303	1	50,303	산업시설용지		A2	50,303	1	50,303	산업시설용지
	A3	58,076	1	58,076	산업시설용지		A3	57,539	1	57,539	산업시설용지
	A4	39,374	1	39,374	산업시설용지		A4	38,991	1	38,991	산업시설용지
	A5	15,401	1	15,401	산업시설용지		A5	14,933	1	14,933	산업시설용지
	A6	31,108	1	31,108	산업시설용지		A6	31,108	1	31,108	산업시설용지
	A7	22,380	1	22,380	산업시설용지		A7	22,380	1	22,380	산업시설용지
	A8	9,979	1	9,979	산업시설용지		A8	9,979	1	9,979	산업시설용지
	A9	45,881	1	21,979	산업시설용지		A9	21,979	1	21,979	산업시설용지
			2	23,902							
	A10	21,902	1	21,902	산업시설용지		A10	23,902	1	23,902	산업시설용지
	A11	45,026	1	45,026	산업시설용지		A11	23,902	1	23,902	산업시설용지
	A12	22,443	1	22,443	산업시설용지		A12	45,026	1	45,026	산업시설용지
							A13	22,443	1	22,443	산업시설용지

2) 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가) 근린생활시설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합 계		20,701		20,701	
B (지원시설용지) [B1~B4]	B1	3,829	1	645	후생지원
			2	645	후생지원
			3	604	후생지원
			4	645	후생지원
			5	645	후생지원
			6	645	후생지원
	B2	6,636	1	922	후생지원
			2	751	후생지원
			3	670	후생지원
			4	525	후생지원
			5	1,029	후생지원
			6	665	후생지원
			7	699	후생지원
			8	665	후생지원
			9	710	후생지원
	B3	6,590	1	702	후생지원
			2	727	후생지원
			3	764	후생지원
			4	727	후생지원
			5	818	후생지원
			6	927	후생지원
			7	947	후생지원
			8	978	후생지원
	B4	3,646	1	587	후생지원
			2	615	후생지원
			3	615	후생지원
			4	615	후생지원
			5	615	후생지원
			6	599	후생지원

나)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합 계		39,670		39,670	
C (환경산업종합기술 지원센터용지)	C1	39,670	1	39,670	

3) 공공시설용지 (변경)

가) 주차장용지

기 정						변 경					
도면 번호	가 구 번 호	면 적	획 지		비 고	도면 번호	가 구 번 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m ²)					위 치	면적(m ²)	
합 계		4,651		4,651		합 계		4,498		4,498	
E (주차장용지) [E1~E2]	E1	3,228	1	3,228	주차장	E (주차장 용지) [E1~E2]	E1	3,075	1	3,075	주차장
	E2	1,423	1	1,423	주차장		E2	1,423	1	1,423	주차장

마.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1) 산업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	산업시설 (A1~A12)	용 도	허용 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강진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상 일반공업지역 내 허용용도 중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부대시설포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A11, A12만 적용)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 시설
		건폐율		70%이하
		용적율		350%이하
		높 이		-
		건축 제한		-
		배치		도로변에 접한 모든 건축물의 출입구, 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도로 경계선 밖으로 돌출할 수 없음
		형태		지붕의 형태는 단경사 및 경사지붕을 권장함
		색채		- 입면특화권역(조선기자재 산업) : A1 ~ A2 - 주조색:N, 보조색·강조색: Y, RP, B계열 - 조망권역(신재생에너지 및 환경산업) : A3 ~ A12 - 주조색:N, 보조색·강조색: 5PB, 7.5BG계열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 A11 ~ A12 - 중로 2-54, 55호선변으로부터 8m (차폐조경 설치)

2) 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가) 근린생활시설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	지원시설 (B1~B4)	용 도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강진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상 일반공업지역 내 허용용도 중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나목의 교육원, 다목의 직업훈련소, 마목의 연구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의 주차장, 나목의 세차장, 라목의 검사장, 바목의 정비공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 시설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350%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치	○ 건물의 주방향을 주도로를 향해 배치함 ○ 도로변에 접한 모든 건축물의 출입구, 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도로 경계선 밖으로 돌출할 수 없음
			형태	○ 지붕 형태는 슬라브형 지양, 아치형 등과 같은 조형적인 디자인이 되도록 권장 ○ 옥상공간을 조정처리하여 휴식 및 휴게를 위해 정원화 권장
			색채	○ 랜드마크권역 : B1~B4 - 주조색:10YR , 보조색·강조색: 5YR, 10YR, 2.5GY계열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 15도로변으로부터 2m

나)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C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C1)	용 도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강진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상 일반공업지역 내 허용용도 중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 시설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350%이하
			높 이	-
			배치	-
			형태	-
			색채	○ 랜드마크권역(C1) - 주조색:10YR , 보조색·강조색: 5YR, 10YR, 2.5GY계열
			건축선	-

3) 공공시설용지 (변경없음)

가) 주차장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E	주차장 (E1~E2)	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강진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상 일반공업지역 내 허용용도 중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 노외주차장 -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 주차전용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부속용도(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설소, 단란주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경마장, 자동차경기장 제외), 판매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제외), 자동차관련시설)는 건축연면적의 30%이내에서 허용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 시설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350%이하
		높 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바.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1) 산업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A	산업시설 A1~A12	■ 차량진출입 ● 차량출입불허구간이 표시된 곳에는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 ●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단, 도로모퉁이에서 20m이내에는 진출입불가 ●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주차장 ● 건축물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강진군 주차장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 대지안의 조경 ● 대지안의 조경면적 확보기준은 관계법규 준수 ● 시각적 차폐감 제고 및 친환경부지조성을 위해 중로 2-54, 55호선변 A11, A12블록에는 건축한계선 8m를이격하여 차폐조경 설치	

2) 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B	지원시설 B1-B4	■ 차량진출입 ● 차량출입불허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 ■ 대지 내 공지 ● 바닥 높이는 인접한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의 높이와 동일하게 유지 ● 바닥재는 인접한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의 바닥재와 같거나 유사한 재료를 사용 ●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쓰레기 적치장, 담장 등 일체의 장애물을 설치 불가	

3)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C	환경산업종합기술 지원센터 C1	■ 차량진출입 ● 차량출입불허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 ■ 주차장 ● 건축물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강진군 주차장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 대지안의 조경 ● 대지안의 조경면적 확보기준은 관계법규 준수	

4) 주차장용지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E	주차장 E1-E2	■ 차량진출입 ● 차량출입불허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 ■ 주차장 ● 건축물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강진군 주차장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5) 기타 사항 (변경없음)

■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본방향	■ 옥외광고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건물·가로경관과 통합된 디자인 지향 ■ 명료화, 단순화, 일체화 개념을 도입한 디자인 적용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기준을 따름
가이드라인 지침	■ 가로형 간판 ● 입체형 간판의 사용을 원칙으로 함 ● 건물 정면부 3층 이하에 설치 ● 가로 크기는 당해 업소 가로 폭의 80% 이내 설치 ● 건물명을 가로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건물폭의 1/2 이내 설치 ● 건물명을 세로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건물높이의 1/4 이내 설치 ■ 돌출형(세로형) 간판 ●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4층 이상에 입주한 업소에 한하여 설치 ● 4층 이상 10층 이내 설치하고 건물 전면 폭과 상관없이 1줄만 설치 가능 ■ 지주이용간판 ● 건물이 5층 이상이거나 업소의 수가 10개 이상일 경우 당해 부지 내에 1개 설치 가능 ● 지면으로부터 5m이내, 1개면의 최대면적은 5㎡ 이내, 총 면적 20㎡ 이내로 설치 가능

8.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및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관련도면 게재 생략
9. 관련도서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관계도서를 강진군 미래산업과(061-430-309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전라남도 고시 제2016-40호

광양 익신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5-299(2015.10.8)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광양익신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8조,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합니다.

2016. 2. 4

전라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명칭 : 광양익신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급증하는 공장부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별입지에 의한 무계획적인 난개발 방지하는 한편 광양항 물동량 및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로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익신리 일원
 - 면적 : 473,158㎡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 개발기간
 - 기정 : 2008년 ~ 환지처분완료일(2015년)
 - 변경 : 2008년 ~ 환지처분완료일(2016년)
 - ※ 변경사유 : 환지처분 및 공기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 개발방법(변경없음) : 민간개발방식(환지방식)
5.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제철로 113
 - 시행자 : 광양익신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조합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 게재생략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재원조달계획(변경)
 - 공사비산정(변경없음)
 - 총 사업비(변경없음)

○ 단계별 개발계획(변경)

구 분		사업기간(년)		사업비(억원)		사업내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381.79	381.79	-
1단계	1단계	2008~2011	2008~2011	14.00	14.00	•산업단지지정 및 실시계획 수립 •공사착공
2단계	2단계	2012	2012	145.85	145.85	•산업시설용지 조성
3단계	3단계	2013	2013	109.01	109.01	•산업시설용지 조성
4단계	4단계	2014	2014	104.48	104.48	•산업단지조성 및 환지처분
5단계	5단계	2015	2015	8.45	4.45	•산업단지조성 및 환지처분
-	6단계	-	2016	-	4.00	•환지처분 완료

※ 변경사유 : 환지처분 및 공기 지연에 따른 기간변경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에너지사용계획(해당 없음)

12.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변경)

○ 업종별 개별업체 인허가 현황

구 분	업체명	면적(㎡)		위치	현황	비고
		기정	변경			
조립금속	(주)만보중공업	11,080	11,080	익신리 682번지 일원	운영중	-
	신성플랜트	5,712	7,609	초남리 719-3번지 일원	운영중	-
	(주)피티에스	3,704	6,545	익신리 675-3번지 일원	운영중	(주)PTS레이저
	가산기공	1,630	1,603	익신리 675번지 일원	운영중	-
	(주)규창	3,590	4,284	익신리 668-14번지 일원	운영중	-
	동서화학공업(주)	828	8,671	초남리 718번지 일원	운영중	한국코텍
기타기계장비	대하남부공업(주)	6,605	7,489	익신리 488-5번지 일원	운영중	불보트럭
전기기계	광양냉동	852	1,614	익신리 662-10번지 일원	운영중	-
	길우시스템(주)	947	1,632	익신리 662-15번지 일원	운영중	유성기업
	(주)에스엔테크	421	1,157	익신리 663-17번지 일원	운영중	-
	영진엔지니어링	1,282	943	익신리 663번지 일원	운영중	-
	신우엔지니어링	1,107	1,107	익신리 675번지 일원	운영중	-
비금속	(주)삼성하우징	2,660	2,660	익신리 674-7번지 일원	운영중	동양기업
석유화학	에스엘피(주)	25,916	27,229	익신리 669-1번지 일원	운영중	S.L.P

※ 변경사유 : 현장조사 오류로 인한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현황 오류정정

14.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해당없음)

15.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16.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변경)

- 공사비산정(변경없음)
- 총 사업비(변경없음)
- 단계별 개발계획(변경)

구 분		사업기간(년)		사업비(억원)		사업내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381.79	381.79	-
1단계	1단계	2008~2011	2008~2011	14.00	14.00	•산업단지지정 및 실시계획 수립 •공사착공
2단계	2단계	2012	2012	145.85	145.85	•산업시설용지 조성
3단계	3단계	2013	2013	109.01	109.01	•산업시설용지 조성
4단계	4단계	2014	2014	104.48	104.48	•산업단지조성 및 환지처분
5단계	5단계	2015	2015	8.45	4.45	•산업단지조성 및 환지처분
-	6단계	-	2016	-	4.00	•환지처분 완료

※ 변경사유 : 환지처분 및 공기 지연에 따른 기간변경

17.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18.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변경)

- 기존 입주업체 및 건축물 현황

상 호	주 소	규 모	비고
가산기공	광양읍 익신리 675-12	사무실1동, 공장1동, 창고1동	-
광양냉동	광양읍 익신리 662-10	사무실1동, 공장1동	-
(주)삼성하우징	광양읍 익신리 674-7	사무실1동, 공장1동, 창고2동	동양기업
대하남부공업(주)	광양읍 익신리 488-5	공장1동	볼보트럭
길우시스템(주)	광양읍 익신리 662-15	사무실1동, 공장1동, 창고1동	유성기업
(주)영진엔지니어링	광양읍 익신리 663	사무실1동, 공장1동	-
(주)에스엔테크	광양읍 익신리 663-17	공장1동	-
(주)규창	광양읍 익신리 668-14	사무실1동, 창고1동	-
에스엘피(주)	광양읍 익신리 669	공장1동, 창고1동	SLP(주)
(주)피티에스	광양읍 익신리 675-3	사무실1동, 공장1동	(주)PTS
(주)만보중공업	광양읍 익신리 682	사무실1동, 공장1동	-
동서화학공업(주)	광양읍 초남리 718	사무실1동, 공장1동, 창고1동	(주)한국코텍
(주)신성플랜트	광양읍 초남리 719-3	사무실1동, 공장1동	-
신우엔지니어링	광양읍 익신리 675	공장1동	신규

※ 변경사유 : 현장조사 오류로 인한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현황 오류정정

○ 토지 명세서

구분	공장명	리명	지번	소유자	면적(㎡)					
					편입면적	공공시설면적			공장부지	
						소계	녹지	도로	환지대상	존치
기정	가산기공	익신리	675	나형준	1,107	31	-	31	-	1,076
		익신리	675-12	양동윤	1,603	182	-	182	-	1,421
변경	신우엔지니어링	익신리	675	나형준	1,107	31	-	31	-	1,076
	가산기공	익신리	675-12	양동윤	1,603	182	-	182	-	1,421
기정	광양냉동	익신리	662-14	신봉근	762	752	752	-	-	10
		익신리	662-10	신봉근	852	-	-	-	-	852
기정	(주)삼성하우징	익신리	674-7	정기채	2,660	207	-	207	-	2,453
제척		익신리	674-10	(주)반도호이스트	550	45	-	45	-	505
제척		익신리	674-9	(주)반도호이스트	1,800	139	-	139	-	1,661
기정	대하남부공업(주)	익신리	488-5	대하남부공업(주)	6,005	-	-	-	-	6,005
		익신리	643-4	대하남부공업(주)	59	-	-	-	-	59
		익신리	488-7	대하남부공업(주)	240	240	240	-	-	-
		익신리	682-24	대하남부공업(주)	668	668	668	-	-	-
		익신리	487-9	대하남부공업(주)	9	9	9	-	-	-
		익신리	682-5	대하남부공업(주)	398	349	337	12	49	-
		익신리	682-25	대하남부공업(주)	110	110	110	-	-	-
기정	유성기업	익신리	662-15	유진성	947	-	-	-	-	947
		익신리	662-16	유진성	685	685	685	-	-	-
기정	(주)영진엔지니어링	익신리	663	김희승	639	-	-	-	-	639
		익신리	663-18	김희승	304	-	-	-	-	304
기정	(주)에스엔테크	익신리	663-17	주경옥	1,157	447	-	447	24	686
기정	(주)규창	익신리	668-14	심창보	3,583	-	-	-	-	3,583
		익신리	668-18	심창보	24	24	24	-	-	-
		익신리	668-19	심창보	677	677	581	96	-	-
제척		익신리	564-10	박희숙	128	128	128	-	-	-
기정	에스엘피(주)	익신리	669	엘스엘피(주)	25,916	41	-	41	-	25,875
		익신리	669-25	엘스엘피(주)	1,113	1,113	1,028	85	-	-
		익신리	669-26	엘스엘피(주)	123	123	63	60	-	-
		익신리	669-27	엘스엘피(주)	77	77	8	69	-	-

구분	공장명	리명	지번	소유자	면적(㎡)					
					편입면적	공공시설면적			공장부지	
						소계	녹지	도로	환지대상	존치
기정	(주)피티에스	익신리	675-2	(주)피티에스	723	-	-	-	-	723
		익신리	675-3	(주)피티에스	2,081	10	10	-	-	2,071
		익신리	675-4	(주)피티에스	1,106	782	580	202	-	324
		익신리	675-14	(주)피티에스	477	96	-	96	-	381
		익신리	675-15	(주)피티에스	1,623	323	-	323	-	1,300
		익신리	675-11	(주)피티에스	376	376	363	13	-	-
		익신리	675-6	강기주	159	159	91	68	-	-
기정	(주)만보중공업	익신리	682	만보중공업(주)	11,080	10	-	10	-	11,070
기정	동서화학공업(주)	초남리	717-1	(주)한국코텍	461	-	-	-	-	461
		초남리	718	(주)한국코텍	7,670	439	-	439	46	7,185
		초남리	718-14	(주)한국코텍	26	26	26	-	-	-
		초남리	718-13	(주)한국코텍	184	35	14	21	8	141
		초남리	718-9	(주)한국코텍	330	330	330	-	-	-
기정	(주)신성플랜트	초남리	719-3	(주)신성플랜트	5,712	-	-	-	-	5,712
		초남리	719-6	라병열	245	-	-	-	-	245
		초남리	719-11	라병열	929	929	846	83	-	-
		초남리	719-10	(주)신성플랜트	243	208	-	208	-	35
		초남리	719-8	(주)신성플랜트	234	234	-	234	-	-
		초남리	719-9	(주)신성플랜트	246	246	-	246	-	-
기정	합계				86,101	10,250	6,893	3,357	127	75,724
변경					83,623	9,938	6,765	3,173	127	73,558

※ 변경사유 : 현장조사 오류로 인한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현황 오류정정

19.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20.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22. 도시관리계획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23. 환지계획(안) (변경)

- 환지계획에 대한 계약 추정(안)으로서 공사시공 완료 후 지적 확정측량 및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확정토록 하겠음
 - 기정은 전라남도 고시 제2015-299호(2015.10.8) 광양 익신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내용임
- 가) 정리 전 토지(변경)

구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계		473,158	473,158	100.0	-
1. 일반지		306,574	308,740	65.3	-
	사유지	306,574	308,740	65.3	-
2. 법제33조해당토지		90,860	90,860	19.2	-
	국유지	78,063	78,063	16.5	-
	공유지	12,797	12,797	2.7	-
	지번미부여토지	-	-	-	-
3. 기존공장부지		75,724	73,558	15.5	-
표준면적		382,298	382,298	-	-

※ 변경사유 : 현황조사 오류로 인한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현황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나) 정리 후 토지(변경없음)

다) 부담률 산정(변경없음)

라) 수입(체비지 매각 금액 및 기반시설지원금 산정) (변경없음)

마) 지출(산업단지 조성 소요 사업비) (변경없음)

25. 공원조성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26. 관련도서 열람방법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관계도서를 광양시청(산단조성과 ☎ 061-797-3427)에 비치하고 14일 이상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전라남도 고시 제2016-4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 2. 4

전라남도지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 분	종 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 치	면 적	기 점	종 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변경	일반 국도 (위임)	15	고흥 ~ 담양선	전라남도 화순군 동북면 천변리	당초 대비 (증)1,098㎡	화순군 동북면 독상리 352(구)	화순군 동북면 천변리 165-2(도)	화순군 동북면 독상리 천변리	0.04
변경	지방도	822	노안 ~ 동복	전라남도 화순군 동북면 독상리	당초 대비 (감)880㎡	화순군 동북면 독상리 351-4(답)	화순군 동북면 천변리 165-2(도)	화순군 동북면 독상리 천변리	0.03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2	광장	교통 광장	동북면 천변리 165-2일원	2,054	증606	2,660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회전교차로 설치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2015. 5 ~ 2015. 1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일반국도15호선】

일련 번호	구 분	편 입 현 황(㎡)							소 유 자		비 고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증·감	주 소	성 명	
		읍면	리								
1	기 정	동북면	천변리	163-2	대	10	-			미등기	
	변 경	동북면	천변리	163-2	대	10	10	증10		미등기	지방도822호선 에서 국도로 편입
2	기 정	동북면	천변리	165-2	도	96	-			국(국토교통부)	
	변 경	동북면	천변리	165-2	도	96	96	증96		국(국토교통부)	지방도822호선 에서 국도로 편입
3	기 정	동북면	천변리	165-4	도	42	-			화순군	
	변 경	동북면	천변리	165-4	도	42	42	증42		화순군	지방도822호선 에서 국도로 편입
4	기 정	동북면	천변리	165-5	도	110	-			화순군	
	변 경	동북면	천변리	165-5	도	110	110	증110		화순군	지방도822호선 에서 국도로 편입
5	기 정	동북면	천변리	223-2	도	426	150			국(국토교통부)	
	변 경	동북면	천변리	223-2	도	426	232	증82		국(국토교통부)	지방도822호선 에서 국도로 편입
6	기 정	동북면	독상리	352	구	1,785	-			국(농수산부)	
	변 경	동북면	독상리	352	구	1,785	193	증193		국(농수산부)	지방도822호선 에서 국도로 편입
7	기 정	동북면	독상리	351-4	답	19	-			화순군	
	변 경	동북면	독상리	351-4	답	19	19	증19		화순군	지방도822호선 에서 국도로 편입
8	기 정	동북면	독상리	657-1	구	234	-			국(농수산부)	
	변 경	동북면	독상리	657-1	구	234	234	증234		국(농수산부)	지방도822호선 에서 국도로 편입
9	기 정	동북면	독상리	327-2	도	13	-			김순옥	
	변 경	동북면	독상리	327-2	도	13	13	증13		김순옥	지방도822호선 에서 국도로 편입

일련 번호	구 분	편 입 현 황(㎡)							소 유 자		비 고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증·감	주 소	성 명	
		읍면	리								
10	기 정	동북면	독상리	656-4	도	8,431	-			국(국토교통부)	
	변 경	동북면	독상리	656-4	도	8,431	82	증82		국(국토교통부)	지방도822호선 에서 국도로 편입
11	기 정	동북면	독상리	358	도	2,875	-			국(국토교통부)	
	변 경	동북면	독상리	358	도	2,875	37	증37		국(국토교통부)	지방도822호선 에서 국도로 편입
12	기 정	동북면	독상리	328-2	도	63	-			오범기	
	변 경	동북면	독상리	328-2	도	63	10	증10		오범기	지방도822호선 에서 국도로 편입
13	기 정	동북면	독상리	351-8	답	199	-			화순군	
	변 경	동북면	독상리	351-8	답	199	170	증170		화순군	신규 추가
계	기 정						-	-			
	변 경						1,098	증1,098			

【 지방도822호선 】

일련 번호	구 분	편 입 현 황(㎡)							소 유 자		비 고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증·감	주 소	성 명	
		읍면	리								
1	기 정	동북면	천변리	163-2	대	10	10			미등기	
	변 경	동북면	천변리	163-2	대	10	-	감10		미등기	지방도822호선 에서 국도로 편입
2	기 정	동북면	천변리	165-2	도	96	96			국(국토교통부)	
	변 경	동북면	천변리	165-2	도	96	-	감96		국(국토교통부)	지방도822호선 에서 국도로 편입
3	기 정	동북면	천변리	165-4	도	42	42			화순군	
	변 경	동북면	천변리	165-4	도	42	-	감42		화순군	지방도822호선 에서 국도로 편입
4	기 정	동북면	천변리	165-5	도	110	110			화순군	
	변 경	동북면	천변리	165-5	도	110	-	감110		화순군	지방도822호선 에서 국도로 편입

일련 번호	구 분	편 입 현 황(m ²)							소 유 자		비 고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증·감	주 소	성 명	
		읍면	리								
5	기 정	동북면	천변리	223-2	도	426	82			국(국토교통부)	
	변 경	동북면	천변리	223-2	도	426	-	감82		국(국토교통부)	지방도822호선 에서 국도로 편입
6	기 정	동북면	독상리	352	구	1,785	145			국(농수산부)	
	변 경	동북면	독상리	352	구	1,785	-	감145		국(농수산부)	지방도822호선 에서 국도로 편입
7	기 정	동북면	독상리	351-4	답	19	19			화순군	
	변 경	동북면	독상리	351-4	답	19	-	감19		화순군	지방도822호선 에서 국도로 편입
8	기 정	동북면	독상리	657-1	구	234	234			국(농수산부)	
	변 경	동북면	독상리	657-1	구	234	-	감234		국(농수산부)	지방도822호선 에서 국도로 편입
9	기 정	동북면	독상리	327-2	도	13	13			김순옥	
	변 경	동북면	독상리	327-2	도	13	-	감13		김순옥	지방도822호선 에서 국도로 편입
10	기 정	동북면	독상리	656-4	도	8,431	82			국(국토교통부)	
	변 경	동북면	독상리	656-4	도	8,431	-	감82		국(국토교통부)	지방도822호선 에서 국도로 편입
11	기 정	동북면	독상리	358	도	2,875	37			국(국토교통부)	
	변 경	동북면	독상리	358	도	2,875	-	감37		국(국토교통부)	지방도822호선 에서 국도로 편입
12	기 정	동북면	독상리	328-2	도	63	10			오범기	
	변 경	동북면	독상리	328-2	도	63	-	감10		오범기	지방도822호선 에서 국도로 편입
계	기 정						880	-			
	변 경						-	감880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전라남도 도로교통과 (☎ 061-286-7442)
화 순 군 안전건설과 (☎ 061-379-3772)

전라남도 고시 제2016-43호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고시

1. 전라남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건설공사품질시험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품질시험수수료 관련도서는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에 비치합니다.

2016. 2. 4

전라남도지사

- 가. 고 시 명 : 2016년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나. 적 용 기 간 : 고시일로 부터 ~ 시험수수료 변경 고시까지
다. 시험수수료 : 다음
라. 기 타 사 항
선박이용이 필요한 도서지역은 시험의뢰자가 선박이용료를 현지 부담.

2016년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 2016년도 건설공사 품질시험비 산출요령

- 수수료산출 : 시험수수료+ 현장시험경비
- 시험수수료 : 시험비 + 출장비
- 현장시험 경비 : 차량운행비(손료+유류대+운전경비)+고속도로통행료

※ 시험수수료

구 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수 수 료(원)			처리 기간 (일)
			계	시 험 비	출장비	
성토용흙	함 수비	KS F 2306	11,600	11,600		3
	입도	KS F 2302	161,300	161,300		4
	세립토비율	KS F 2309	28,500	28,500		4
	밀 도	KS F 2308	45,700	45,700		3
	액성한계	KS F 2303	46,600	46,600		3
	소성한계	KS F 2303	30,900	30,900		3
	노상토지지력비 (CBR)	KS F 2320	256,100	256,100		10
	다 집	KS F 2312	144,100	144,100		4
되메우기및 구조물뒷채움	다 집	KS F 2312	134,000	134,000		4
	현장밀도	KS F 2311	98,100	68,100	30,000	4
	평판재하(성토재)	KS F 2310	196,400	136,400	60,000	7
	입 도	KS F 2312	161,300	161,300		4
	함수비	KS F 2316	11,600	11,600		3
노 체	다 집	KS F 2312	125,900	125,900		4
	함 수 비	KS F 2306	11,500	11,500		3
	현 장 밀 도	KS F 2311	88,600	58,600	30,000	4
	평 판 재 하	KS F 2310	196,400	136,400	60,000	7
노 상	다 집	KS F 2312	125,400	125,400		4
	함 수 비	KS F 2306	11,400	11,400		3
	현 장 밀 도	KS F 2311	88,100	58,100	30,000	4
	평판재하	KS F 2310	196,400	136,400	60,000	7
콘크리트용 골 재	절대건조 밀도및흡수율	KSF2503 KSF2504	31,400	31,400		7
	입도, 조립률	KSF2502 KSF2526	32,300	32,300		7

콘크리트용 골재	0.08mm체통과량	KS F 2511	16,200	16,200		4
	점 토 덩 어 리	KS F 2512	24,100	24,100		7
	굵은골재의 마모율	KS F 2508	30,300	30,300		5
	안 정 성	KS F 2507	72,900	72,900		15
	염화물 함유량	KS F 2515	20,100	20,100		4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절대건조 밀도및흡수율	KSF2503 KSF2504	31,000	31,000		7
	입도, 조립률	KSF2502 KSF2526	32,300	32,300		7
	굵은골재 마모율	KS F 2508	30,300	30,300		5
	안 정 성	KS F 2507	68,000	68,000		15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절대건조 밀도및흡수율	KSF2503 KSF2504	31,000	31,000		7
	입 도	KS F 2502	31,700	31,700		4
	0.08mm체통과량	KS F 2511	16,200	16,200		4
	굵은골재의 마모율	KS F 2508	30,300	30,300		5
	점토덩어리량	KS F 2512	24,100	24,100		7
	굵은골재의 안정성	KS F 2507	74,500	74,500		15
석 재	밀도 및 흡수율	KS F 2518	35,800	35,800		4
	압축강도	KS F 2519	21,500	21,500		4
동상방지층 및보조기층	골재의0.08mm체 통과량	KS F 2511	16,800	16,800		4
	골재의밀도및 흡수율	KS F 2503	29,300	29,300		7
	마모	KS F 2508	32,800	32,800		5
	노상토지지력비 (CBR)	KS F 2320	227,900	227,900		10
	다 집	KS F 2312	124,100	124,100		4
	체 가 림	KS F 2502	142,800	142,800		7
	함 수 비	KS F 2306	11,400	11,400		3
	현장밀도	KS F 2311	88,100	58,100	30,000	4

	평판재하	KS F 2310	196,400	136,400	60,000	7
	모래당량시험	KS F 2340	56,100	56,100		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굵은골재/입도	KS F 2502	28,600	28,600		4
	굵은골재/절건밀도	KS F 2503	31,800	31,800		5
	굵은골재/흡수율	KS F 2503	12,300	12,300		5
	굵은골재/안정성	KS F 2507	66,100	66,100		15
	굵은골재/편장석률	KS F 2575	20,500	20,500		4
	굵은골재/마모율	KS F 2508	30,400	30,400		4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굵은골재/파쇄면 비율	KS F 2357	10,600	10,600		4
	잔골재/입도	KS F 2502	32,100	32,100		4
	잔골재/절건밀도	KS F 2503	29,700	29,700		5
	잔골재/흡수율	KS F 2503	11,300	11,300		5
	잔골재/안정성	KS F 2507	50,100	50,100		15
	잔골재/모래당량	KS F 2340	57,500	57,500		5
	잔골재/공극률	KS F 2384	20,600	20,600		5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중간층/안정도	KS F 2337	63,100	63,100		4
	기층/중간층/흐름값	KS F 2337	63,100	63,100		4
	표층/안정도	KS F 2337	63,100	63,100		10
	표층/흐름값	KS F 2337	63,100	63,100		10
플랜트 혼합물	역청함유량	KS F 2354	89,700	89,700		5
	체가름	KS F 2502	95,800	95,800		5
	마찰안정도	KS F 2337	64,700	64,700		10
	피막박리	KS F 2355	142,400	142,400		4
혼합물의 포설	코아채취	KS F 2350	155,600	125,600	30,000	4
	밀도	KS F 2353	52,600	52,600		4
	두께	KS F 2367	22,100	22,100		4
콘크리트 경계블록 (보차도용)	겉모양 및 치수	KS F 4006	8,900	8,900		5
	휨강도	KS F 4006	24,500	24,500		5
	흡수율	KS F 4006	23,600	23,600		5
호안용 블록	압축강도	KS F 2405	20,200	20,200		5
콘크리트 벽돌	치수	KS F 4004	8,600	8,600		5
	기건비중	KS F 4004	14,200	14,200		5

콘크리트 벽돌	압축강도	KS F 4004	21,400	21,400		5
	흡수율	KS F 4004	43,000	43,000		5
점토벽돌	치수	KS L 4201	8,600	8,600		5
	흡수율	KS L 4201	38,100	38,100		5
	압축강도	KS L 4201	31,400	31,400		5
속빈콘크리트 블록	기건비중	KS F 4002	15,900	15,900		5
	압축강도	KS F 4002	18,300	18,300		5
	흡수율	KS F 4002	37,500	37,500		5
굳지않은 콘크리트 (레미콘포함)	염화물함유량	KS F 4009	15,300	15,300		7
	압축강도	KS F 2405	10,100	10,100		7

현장시험 경비

□ 시행기간 : 2016. 2.12 ~ 변경 고시일까지

시 군	경 비(원)	시 군	경 비(원)
목 포	68,700	장 흥	47,000
여 수	160,800	강 진	48,200
순 천	137,600	해 남	64,600
나 주	23,600	영 암	23,500
광 양	161,400	무 안	45,400
담 양	71,500	합 평	45,800
곡 성	101,400	영 광	73,500
구 례	140,700	장 성	65,900
고 흥	145,500	완 도	110,300
보 성	64,600	진 도	113,600
화 순	39,600	신 안	69,900

전라남도 고시 제2016-44호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라남도 곡성군 소재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2. 4

전라남도지사

1. 고 시 명 :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1	유형문화재 51	곡성 충렬사	곡성군 입면 삼오리 산60
2	유형문화재 82	태안사 능파각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18-1
3	유형문화재 83	태안사 일주문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20
4	유형문화재 160	곡성 함허정	곡성군 입면 제월리 1016-2
5	기념물 56	용산재 및 덕양사	곡성군 목사동면 구룡리 180 곡성군 오곡면 덕산리 36
6	기념물 101	곡성 도림사 계곡	곡성군 곡성읍 월봉리 27-1
7	기념물 236	곡성 당동리산성	곡성군 죽곡면 당동리 산12외
8	문화재자료 22	도림사	곡성군 곡성읍 월봉리 327
9	문화재자료 23	태안사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20
10	문화재자료 24	관음사	곡성군 오산면 선세리 20
11	문화재자료 25	유월파 정열각	곡성군 옥과면 합강리 산16-4
12	문화재자료 27	곡성향교	곡성군 곡성읍 교촌리 194
13	문화재자료 120	덕산사	곡성군 오곡면 덕산리 173
14	문화재자료 167	영류재	곡성군 죽곡면 봉정리 522
15	문화재자료 170	태안사 삼층석탑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17

나.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74조
-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 제25조, 제37조

다. 기준의 적용

-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전라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제25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검토를 생략 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다음
-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확인처
 - 전라남도 곡성군 관광문화과
 - 전라남도 홈페이지(www.jeonnam.go.kr) : 문화예술과 자료실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보존관리지도 참조

3. 기준 시행일 : 2016년 2월 4일

4. 연 락 처

가. 전라남도 관광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 주 소 : (우)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 연락처 : 전화 (061)286-5441~5447

나. 전라남도 곡성군 관광문화과

- 주 소 : (우)57536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 연락처 : 전화 (061)360-8347, 8349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51호 곡성충렬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용도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	● 기존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 개별심의 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0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곡성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재·개축 및 보수가능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82호 태안사 능파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83호 태안사 일주문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3호 태안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70호 태안사 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용도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	• 기존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타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 보물 제273호 태안사적인선사조륜청정탑 • 보물 제273호 태안사광자대사탑 • 보물 제273호 태안사광자대사비		
1구역	• 개별심의 구역		
공통사항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60호 곡성 함허정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용도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	• 기존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타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 중요민속자료 제155호 군지촌정사(국가지정문화재)		
1구역	• 기존건물 재·개축 허용 • 목조 한옥 건축물에 한하여 신축 허용(건축물 최고 높이 6.0m 이하) • 분묘의 새로운 조성 금지, 기존 분묘 원형 보존		
2-1구역	• 제한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 주거 및 농업용 창고에 한함 • 주변경관과 조화된 지붕색채 및 형태(경사지붕) 한함. • 묘지(납공당) 조성 금지	
2-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0m 이하 • 주거 및 농업용 창고에 한함 • 묘지(납공당) 조성 금지	• 건축물 최고높이 12.0 m 이하 • 주거 및 농업용 창고에 한함 • 묘지(납공당) 조성 금지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0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0 m 이하	
4구역	• 곡성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재·개축 및 보수가능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20호 덕산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 전라남도 기념물 제56호 용산재 및 덕양사 중 덕양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용도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	• 기존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 개별심의 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0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0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구역	• 곡성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재·개축 및 보수가능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전라남도 기념물 제56호 용산재 및 덕양사 중 용산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용도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	• 기존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 개별심의 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0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곡성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재·개축 및 보수가능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예: 지붕색상- 회색, 암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전라남도 기념물 제101호 곡성 도림사계곡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2호 도림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용도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	• 기존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 개별심의 구역		
공통사항			

○ 전라남도 기념물 제236호 곡성 당동리산성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용도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	• 기존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 개별심의 구역		
3구역	• 곡성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재·개축 및 보수가능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4호 관음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용도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	• 기존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 개별심의 구역		
공통사항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5호 유월과정열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용도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	• 기존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 개별심의 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0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0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구역	• 곡성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재·개축 및 보수가능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7호 곡성향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용도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	• 기존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 개별심의 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0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0m 이하	
3구역	• 곡성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재·개축 및 보수가능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8호 석곡리 석불입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용도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	• 기존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 개별심의 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0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0m 이하	
3구역	• 곡성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재·개축 및 보수가능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9호 도동묘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29호 수성당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용도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	• 기존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 개별심의 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0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0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구역	• 곡성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재·개축 및 보수가능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예: 지붕색상- 회색, 암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67호 영류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용도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	기존현상변경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		
1구역	개별심의 구역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0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0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0m 이하	
4구역	곡성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재·개축 및 보수가능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예: 지붕색상-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전라남도 고시 제2016-46호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농지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고시합니다.

2016. 2. 4

전라남도지사

1. 농업진흥지역 변경현황

(단위 : ha)

구 분	용도구역	당 초	변 경	증 감
전라남도	농업진흥지역	231,719.95	231,715.13	감 4.82
	진흥구역	199,906.20	199,901.39	감 4.81
	보호구역	31,813.75	31,813.74	감 0.01
구 레 군	농업진흥지역	3,433.14	3,428.32	감 4.82
	진흥구역	3,071.52	3,066.71	감 4.81
	보호구역	361.62	361.61	감 0.01

2. 농업진흥지역 해제 내역

가. 근거 : 농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나. 고시내역

구분	위 치	면적 (ha)	용도구역 변경	사 유
해제	구례군 용방면 죽정리 146-35번지 외 56필지	4.82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구례 자연드림파크 2단지 조성

3. 기 타

가. 농업진흥지역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관계도면(축척1/5,000이상)과 토지조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이 해당 시
군에서 20일 이상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전라남도 고시 제2016-50호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지정번호 변경 고시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 제21조와 동 시행규칙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지정번호를 변경 고시합니다.

2016. 2. 4

전라남도지사

지정별	문화재명	소재지	변경 지정 내용	변경 사유	변경일자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70호	강진 여택정	강진군 대구면 수동리 499-1 (수동길 57-1)	- 지정번호 변경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69호	오기 정정	전라남도보 고시일(2016.2.4)

전라남도 공고 제2016-101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6. 2. 4

전라남도지사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등록일자
건축공사업 (제150786호)	세기건설(주) (김정희)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420, 3층	2016. 1. 27.

전라남도 공고 제2016-116호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태양광발전 등) 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2. 4

전라남도지사

○ 양수인가 내용

구 분		양 도 인	양 수 인
태 양 광 발전사업 (전남제4194호)	업 체 명	광명태양광(주)	(주)다쓰테크
	발전소명	유일2 태양광발전소	유일2 태양광발전소
	대 표 자	유 양 우	금 만 희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189, 6층 (방이동, 광명빌딩)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송대길 109
	설치장소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339-14(건물)	
	설비용량	1,014kW	
	허가일자	2015년 9월 25일	
	양 수 예 정 일	2016년 1월 (양도양수 계약 : ' 16. 1.)	

구 분		양 도 인	양 수 인
태 양 광 발전사업 (전남제3588호)	업 체 명		
	발전소명	심청7 태양광발전소	심청7 태양광발전소
	대 표 자	이 임 수	안 병 노
	소 재 지	광주광역시 서구 금부로 100, 103동 801호 (금호동,라인아파트)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449번길 44-1 (산수동)
	설치장소	곡성군 오산면 조양리 산 135, 산135-6, 산135-8, 산135-15, 산135-17, 산135-18	
	설비용량	1,369.5kW	
	허가일자	2014년 5월 20일	
	양 수 예 정 일	2015년 12월 (양도양수 계약 : ' 15. 12.)	

구 분		양 도 인	양 수 인
태 양 광 발전사업 (전남제2725호)	업 체 명		
	발전소명	송호 태양광발전소	범흥3호 태양광발전소
	대 표 자	박 동 순	지 영 숙
	소 재 지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송호길 39-14	전라남도 해남군 현산면 달마로 703
	설치장소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산125-12, 666-3, 667-1, 667-5	
	설비용량	1,000kW	
	허가일자	2014년 1월 24일	
	양 수 예 정 일	2016년 1월 (양도양수 계약 : ' 16. 1. .)	

전라남도 공고 제2016-120호

전라남도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2. 4

전라남도지사

- 안건
1.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전라남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전라남도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전라남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
 7. 전라남도립국악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전라남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일자리 창출과”를 “전라남도민의 일자리 창출 및”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의 행복한 삶의 영위와”를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자리 창출”이란 일자리 개발과 교육훈련 및 취업서비스, 일자리 수준 향상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제2호 본문 중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에 따른”을 삭제하고, “29세”를 “39세”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2호에 따라”를 “취약계층이란”으로, “말한다”를 “말하며,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일자리창출계획”을 “연도별 일자리 창출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인프라 및 연계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구인·구직자간 일자리 정보 불일치 해소
4. 청년 직업능력 개발과 교육훈련 및 취업알선
5. 특성화 고등학교·대학교·기업 간 일자리 창출 연계
6. 주력산업, 특화산업 일자리 창출 연계
7. 취약계층 일자리 안전망 구축
8. 창업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제5조의 제목 “(일자리 창출 사업)”을 “(경비의 지원)”으로 하고,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을 추진”을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직업훈련, 인력양성 관련 기관·단체 육성 및 지원
2.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및 일자리 연계망 지원
3. 취업지원서비스 관련 기관·단체 육성 및 지원
4. 기업현장 일자리 불일치 해소 지원
5. 특성화 고등학교·대학교·기업 연계 취업 지원
6. 인력양성기관 교육환경 및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

7. 중소기업 청년인턴, 전문인력 및 근속장려금 지원
8. 지역·특화산업 관련 맞춤형 일자리 지원
9. 투자기업, 중소기업 일자리 육성 및 지원
10. 사회적경제기업, 공동체사업 일자리 육성 및 지원
11.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12. 창업 육성체계 구축 및 창업 관련 기업·기관·단체 지원
13. 창업 관련 기술지주회사 지원
14.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지원

제6조의 제목 “(취업지원 사업)” 을 “(일자리 영향평가)”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를 제7조로 하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일자리창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일자리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전라남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중전의 제8조)제5항 중 “두고, 간사는” 을 “두며, 간사는 도 일자리정책실” 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수당” 을 “수당,” 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위원회 기능)” 을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군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도지사는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를 제10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이하 “지역인재”라 한다)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대학 등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협의회의 설치) 도지사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전라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각 기관의 역할과 협력 사항
2. 지역사회 여건을 반영한 지방대학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 방안
3.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정책의 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지역인재의 육성과 취업, 지역사회 정주를 위한 각 기관의 협력 사항
5. 법령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방대학, 공공기관 등에 위임한 사항
6. 지역인재 채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6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협의회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지방대학 총장
2. 전라남도교육감이 추천한 사람
3. 기업체, 연구원, 공공기관의 장
4. 전라남도회의회의장이 추천한 도의원
5.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직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승계한다.

④ 협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전라남도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원하거나,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협의회 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협의·조정,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 협의회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도지사는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경비보조 및 지원) 도지사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대학 특성화 등 지방대학의 역량 강화 사업
2. 취업능력 개발 등 지역인재 육성 사업
3.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
4.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12조(사업의 공동추진) 도지사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학, 기업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전문능력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과 관련된 연구개발 업무
2.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와 관련된 성별구분통계 조사 업무
3.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4조(검사·감독) ① 도지사는 지방대학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검사·감독할 수 있다.

② 경비보조 및 지원, 사업의 공동추진,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규를 적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 중 “사용료는”을 “사용료와 실내사격장 전자표적 사용료는”으로 개정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의 명칭·위치 등(제3조, 제4조 관련)

시 설 명	위 치	주요기능	비 고
전라남도 국제사격장	나주시 사격장길 82	공기총, 화약총, 클레이사격장, 선수합숙소	
전라남도 사이클경기장	나주시 건재로 130-13	벨로드롬경기장, 선수합숙소	
전라남도 종합체육관	나주시 건재로 130-13	펜싱, 체조, 레슬링, 훈련장	
전라남도 체육회관	무안군 삼향읍 오룡1길 41	도 체육·가맹 경기단체 사무실, 다목적강당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제6조 제1항 관련)

1. 전용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명	사용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행사	
		평 일	공휴일	평 일	공휴일
전라남도 사이클경기장	주 간	30,000	40,000	40,000	50,000
전라남도 국제사격장	스키트(주간)	30,000	40,000	40,000	50,000
	트랩·아메리칸(주간)	20,000	30,000	30,000	40,000
	실 내	공기총	10,000	20,000	30,000
		화약총	20,000	30,000	40,000
전라남도 종합체육관	주 간	20,000	30,000	60,000	70,000
	야 간	30,000	45,000	90,000	105,000

※ 1일 사용 기준 : 8시간

※ 조기 시간시부터 사용시는 : 5,000원 추가 징수

2. 일시사용료

○ 전라남도 사이클경기장·종합체육관·체육회관

(단위 : 원)

구분	사용 구분	기준	1인당 사용료						비 고
			개 인			단 체			
			일반	학생 군인	어린이	일반	학생 군인	어린이	
전라남도 사이클경기장	경기장	1회 2시간	1,000	700	500	700	500	300	※ 단체는 동일 소속팀 10명 이상
전라남도 종합체육관	체조 레슬링 펜싱	1회 2시간	1,000	700	500	700	500	300	
전라남도 체육회관	실내종목	1회 4시간	3,000	2,000	1,500	2,000	1,500	700	

○ 전라남도 국제사격장

① 클레이사격장(트랩, 스킵트, 아메리칸트랩)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용금액	비 고
개 인	1라운드	22,000	
단 체	1라운드	18,000	
선 수	1라운드	7,000	연습 사용
	1라운드	6,000	대회 사용

• 개인 및 단체는 실탄 25발, 접시 25장, 조끼대여 포함 금액
 • 단체는 동일소속팀 10명 이상
 • 선수는 접시만 제공하는 금액이며,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사격 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

② 실내사격장 전자표적 사용료

(단위 : 원)

종 목		전자표적사용료		사대사용료				비고
				개인		선수단체		
		2시간	4시간	2시간	4시간	2시간	4시간	
10m	공기소총	1,500	3,000	1,300	2,000	1,000	1,500	
	공기권총	1,800	3,600	1,300	2,000	1,000	1,500	
10m	런닝타겟	4,000	8,000	2,000	2,500	1,500	1,800	
25m	권총, 스탠다드, 센터파이어	5,000	10,000	2,000	2,500	1,500	1,800	
	속 사 (0.5조 5사대)	8,000	16,000	3,500	6,000	2,500	4,000	
50m	소총, 권총	5,000	10,000	2,000	2,500	1,500	1,800	

- 단체는 동일소속팀 10명 이상으로 한다.
- 선수는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사격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
- 전자표적사용시 전자표적사용료와 사대사용료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단,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소속 선수는 사대사용료를 면제한다.)
- 전자표적 소모품 구입 시세(환율)에 따라 사용료를 가감할 수 있다.

3. 방송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TV		라디오		비 고
			국 제	국 내	국 제	국 내	
중 계 방 송	체육 경기	전라남도 종합체육관 전라남도 국제사격장 전라남도 사이클경기장 전라남도 체육회관	30,000	15,000	20,000	10,000	중계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
	체육외 행사		40,000	20,000	20,000	10,000	
녹화 및 촬영	녹화 또는 녹음		중계방송액의 50/100				
	경기 또는 행사촬영		TV 중계방송과 동일				

4. 상업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금
1. 시설을 이용한 영화 등의 촬영 행위	주 간	20,000
	야 간	30,000
2. 애드벌룬 등의 계양에 의한 광고 행위	1일 1개	2,000
3. 프로그램 등의 판매 행위		판매총액×20/100
4. 기타 게시 등의 부착 광고물	대형(30미터×1.3미터)미만 1년간	300,000
	중형(20미터×1.3미터)미만 1년간	300,000
	소형(10미터×1.3미터)미만 1년간	100,000
	플래카드, 현수막 제곱미터당 (1일 기준)	1,000

5.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방송시설	확성기 1조 1일 1회	5,000	
	마이크(개당) 1일 1회	5,000	
	전부사용(앰프포함)	50,000	
전 기	킬로와트당	관허요금	
전 광 판	1일 1회	10,000+전기사용료	
식당/매점			별도 계약에 의함
기타시설물			도지사가 따로 정함

6. 입장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일 반	학생·군인	어린이	
입장료	1인1회	400	200	100	단체는 기준액의 50% 징수

※ 단체는 동일소속팀 10명 이상

7. 사격장의 숙소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일 반	1일1인당	10,000	
학생, 군인, 어린이	1일1인당	5,000	
• 냉·난방 사용료는 사용자가 실비부담			

전라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라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전라남도통합방위협의회와 전라남도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전라남도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
2. 을중 및 병중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3.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 나. 향토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 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 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4.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양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5.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 선정 또는 해제
6. 통제구역 설정
7.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34조 규정 사항
8.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조제1호 규정 사항
9.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전라남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전라남도회의회의장
2. 제31보병사단장
3. 전라남도교육감

4.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5. 국가정보원광주지부장
6.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7. 국군제610기무부대장
8. 제11공수특전여단장
9. 해군제3함대사령관
10. 공군제1전투비행단장
11.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
12. 광주지방교정청장
13. 광주지방보훈청장
14.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15. 한국전력공사전남본부장
16. 케이티(KT)전남본부장
17. 광주전남재향군인회장
18. 전라남도소방본부장
19.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한 사람

③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협의회총괄 간사: 전라남도통합방위협의회 담당 실·국장
2. 심리전담당 간사: 전라남도 대변인
3. 작전담당 간사: 육군 제1989부대 작전참모
4. 정보담당 간사: 국가정보원광주지부 대공수사처장
5. 경찰담당 간사: 전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
6. 예비군담당 간사: 제31보병사단 동원참모

④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 한다.

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통합방위사태 선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의2(협의회의 통합·운영)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운영한다.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전라남도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전라남도민방위협의회

제4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전라남도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15인 이내로 하되,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하는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간부급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
3. 관계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④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전라남도지사 소속하에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며, 본부장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된다.

②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6.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③ 지원본부는 종합상황실과 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 및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④ 종합상황실은 실장과 15인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 반장을 지휘·감독한다.

⑤ 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은 실장과 6인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육군 제1989부대 교훈참모가 된다.

⑥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 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9인 내외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⑦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한 국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간부급으로 한다.

⑧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 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써 다음 각목의 사항
 -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 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 라. 관계기관과의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 훈련
-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봉사활동의 실시
-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 나. 모래병커 또는 연못
 -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
 -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 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
 -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국제경제협력 기구를 말한다.
2.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투자가”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18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2장 투자유치 지원체제

제3조(투자유치협의회) ①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정무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일자리정책실장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전라남도 경제과학국장, 관광문화체육국장, 건설도시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가운데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전라남도의회 의원
2.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원 또는 투자유치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3. 투자유치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입주기업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장·군수는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소집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⑦ 협의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 ⑧ 협의회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협의회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투자유치자문관) ① 도지사는 국내외 투자유치 전문가를 전라남도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하는 경우 상담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제5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은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입지 지원) 도지사는 도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시설용지의 임대료 및 분양가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설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도내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고용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도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규로 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도내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을 포함한다)를 신축하는 경우
2.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3.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4. 그 밖에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비 지원

제11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 분할납부, 임대할 때의 임대료 감면율은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컨설팅비용 지원) 도지사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도내에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외국인투자의 지원대상은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투자기업의 총 지원금액은 해당 투자기업이 투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은 해당 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의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14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 정부지원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을 지원할 때에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5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진입도로·용수시설·정보통신시설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국내기업 투자지원

제16조(국내기업 지원의 준용) ① 도지사는 도내에 입주하는 국내기업과 관광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에 투자하는 개인과 법인 등에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내기업이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입주하는 경우 매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국내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기업에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도가 소유하는 토지·공장 그 밖에 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임대 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

른 수도권에 있는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매각 또는 임대할 때
2. 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제조업체로서 도내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이 10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도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 또는 임대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른 토지·공장 그 밖에 공유재산의 매각 또는 임대에 관한 모든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42조와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8조(수도권기업 등의 도내 이전비 지원) 도지사는 수도권 기업 등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9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도지사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게 도유재산의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과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보조금 지원한도) 이 조례에 의하여 도내 투자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기업당 50억원 이내로 한다.

제21조(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금액이 미화 5천만불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2. 국내투자기업은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제22조(시·군의 투자기업유치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① 도지사는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경비의 일부를 해당 기업이 입지하는 지역의 시장·군수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시·군이 분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등은 협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등) ① 도내 투자기업이 도지사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은 지원을 요청할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투자기업의 투자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받거나 저당권 또는 가등기 등을 설정할 수 있다.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받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 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도내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지원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상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행한 후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투자기업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도내 투자기업의 사기 양양을 위하여 해당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해당 기업의 날로 지정하여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내 투자 사업장내 공장 신·증축 준공일
2. 신제품 발표일 또는 창립기념일
3. 지역사회 공헌 활동일
4. 대규모 투자 등 기업 홍보가 필요한 날
5. 그 밖에 해당 기업이 지정 신청하는 날

제24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
2.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공장착공이 지연된 기간은 제외한다.
3. 공장 준공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을 하지 않은 경우
4.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 공정에 뚜렷하게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5.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축소 또는 휴·폐업 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6.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계약후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7.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없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8. 그 밖에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③ 도내 투자기업은 도지사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내에 처분할 수 없으며,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내 처분하

는 경우 매각대금 가운데 기업이 부담한 원금과 산업집적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이자 및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또는 지원한 보조금 중 큰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투자기업이 정당한 사유로 부득이 처분할 때에는 매각대금 가운데 기업이 부담한 원금과 산업집적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이자 및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⑤ 도지사에게 임대료를 지원받은 도내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한 토지를 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5년 이내에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임대료 가운데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에게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 받은 도내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 대상이 되는 고용 및 교육훈련 인원을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 부터 3년 이상 유지 하여야 하며, 3년 이상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미달인원과 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환수해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제25조(기업 및 자본유치 실적보상) 도지사는 국내외 기업과 자본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26조(권한의 위임)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 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무처리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전라남도투자유치협의회 및 투자유치자문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것으로 본다.

전라남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별지서식 중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일괄 개정하여 도민의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등록번호 개정) 전라남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 중 개정하는 내용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이”로 한다.

■ 전라남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별표]

조례 중 별지서식 개정대상

부서별	조례명	서식	서식명	개정사항
도민소통실	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2호서식	지급(대상,비대상)결정통지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3호서식	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지급변동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4호서식	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생계비지급대장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세정담당관	전라남도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별지 제2호서식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전라남도 수입증지조례	별지 제1호서식	수입증지판매인신고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문화예술과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대장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6호서식	작가경력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7호서식	대행인 경력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친환경농업과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유기농 명인 지정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해양항만과	전라남도 항만시설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선박입출항신고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3호서식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4호서식	항만시설사용허가증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지역계획과	전라남도 부실공사 방지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부실 공사 신고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도로교통과	전라남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연기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2호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3호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부서별	조례명	서식	서식명	개정사항
도로교통과	전라남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승인 인가 준공검사 등 내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5호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승인 인가 준공검사 등 내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총무과	전라남도 포상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공적조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자치행정과	전라남도 주민투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6호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7호서식	이의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회계과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직무발명 신고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방호예방과	전라남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전라남도 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의회	전라남도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별지 제1호서식	의원상해보상금청구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2호서식	의원상해보상금청구심의결과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농업기술원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성적서발급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전라남도 대한민국농업박람회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시설사용(변경) 허가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부서별	조례명	서식	서식명	개정사항
농업기술원	전라남도 대한민국농업박람회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시설사용(변경)허가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4호서식	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5호서식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동부지역본부	전라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공원시설사용료징수허가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3호서식	도립공원 시설사용료 징수허가에 관한 게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전라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확인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년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계획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산림자원 연구소	산림자원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임업시험의뢰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2호서식	임업시험성적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별지 제3호서식	임업시험성적서 사본 교부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전라남도립 도서관	전라남도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자료 관외 대출신청서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전라남도립국악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립국악단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방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하고 남도국악의 계승과 새로운 문화 창조를 위하여 전라남도립국악단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임단원”이란 전라남도립국악단(이하 “국악단”이라 한다)의 일원으로서 상근하며 상시공연을 연구·지도·출연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비상임단원”이란 국악단 활동 시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연습에 참가하거나 공연에 출연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공개전형”이란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실기와 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전형을 말한다.
4. “특별전형”이란 서류심사로 실시하는 전형을 말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과 실기를 병행할 수 있다.
5. “정기공연”이란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공연을 말한다.
6. “수시공연”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단위 행사나 다른 기관 또는 단체의 요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승인하여 시행하는 정기공연 외의 모든 공연을 말한다.

제2장 도립국악단 구성 및 운영

제3조(구성) ① 국악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80명 이내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20명 이내로 비상임 단원을 둘 수 있다.

② 국악단에 단장 소속으로 예술감독 1명, 부감독 1명, 부별 수석단원 1명과 부수석단원 1명, 사무장 1명을 둔다.

③ 단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예술감독은 공개전형을 거쳐 국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예술감독을 제외한 단원은 단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국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연단에는 창악부, 기악부, 사물부, 무용부를 두고, 사무 관리팀에는 사무장, 일반사무담당, 홍보기획·마케팅담당, 악기의상담당, 음향조명담당을 두며, 분야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임무) ① 단장은 도지사의 지휘를 받아 국악단을 원활히 운영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예술감독은 단장을 보좌하고 소속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수석단원은 예술감독의 지휘를 받아 소속단원을 교육 및 지도한다.

④ 사무장은 국악단의 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업무) 국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남도국악의 보존 및 육성
2. 남도국악에 대한 연구 및 교육
3. 도민을 위한 국악의 공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각종 공연

제6조(단원 모집) ① 단원의 모집은 공개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특별전형에 따른다.

② 특별전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모집한다.

1. 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
2. 전국 규모의 예술경연대회에서 부문별 1등으로 입상한 사람

③ 실기전형을 위해 각 부별로 3명이상 5명 이하의 전형위원을 위촉하되, 외부전문가 2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며, 면접전형위원은 예술감독과 문화예술과장을 포함한 3명 이내로 구성하고, 특별전형의 경우에는 실기전형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전형위원은 국악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국악에 대한 이론과 실기를 두루 갖춘 유능한 사람을 단장이 위촉한다.

제7조(단원의 위촉) ① 단원의 위촉 나이는 18세 이상 58세 이하로 한다.

② 예술감독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최대 2회까지 재위촉할 수 있다.

③ 사무장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④ 수석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⑤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제8조(적용제외) 예술감독의 위촉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하는 결격자는 단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0조(단원해촉) ① 도지사는 단원이 다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를 통하여,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악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에 불응한 사람
2. 단장의 승인 없이 자체공연 외의 공연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사람
3. 단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린 사람
4. 국악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5.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6. 그 밖에 신체나 정신장애 등으로 맡은 일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

②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개인사정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3. 자연재해 또는 전사사변 그 밖의 사정으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여 6개월 이상 경과되었을 때

제11조(단원의 복무) ① 단원은 국악인으로서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창의와 성실로 맡은 일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단장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단원은 단장의 승낙 없이는 다른 직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 단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공연) ① 국악단 공연은 정기공연과 수시공연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수시공연에 따른 차량, 단원숙식 등 소요경비는 공연을 요청한 기관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비용부담을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관람료 및 초청료 징수) ① 국악단의 관람료는 일반인 기준 최대 1만원, 초청료는 최대 6백만원의 범위에서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람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의 노인
2. 보호자를 동반한 7세 이하의 취학 전 어린이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
6. 그 밖에 도지사가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는 사람

② 국악단의 유료공연 시 관람권을 발행하되 10퍼센트 범위에서 무료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관람권은 위탁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람권판매 총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판매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관람권 판매 수입금과 공연료는 국악단 육성기금으로 관리한다.

⑤ 다른 기관단체에서 국악단을 초청하여 공연하려면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연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 ① 국악단은 국악의 진흥과 국악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도민에 대한 국악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일정, 장소, 교육과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예술감독이 계획을 수립하여 단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③ 교육을 받는 사람은 교육실시에 따른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제15조(단원 보수 및 여비) 단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여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예산) 단원의 보수 등 국악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계연도마다 전라남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7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국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악단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국악계, 문화예술계, 관련 학계 등에서 국악분야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위원 임무) 운영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악단 업무 기획과 운영에 대한 자문
2. 국악단의 공연과 교육활동 등에 대한 자문
3. 단원의 해촉 요구
4. 국악단원 기량심사에 관한 사항
5. 국악단육성기금 사용에 대한 자문
6. 그 밖에 도지사가 국악단 운영 등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1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어린이국악단 설치

제20조(어린이국악단 설치) 남도국악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우리 지역의 인재 발굴·육성을 위하여 국악단에 전라남도어린이국악단(이하 “어린이국악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21조(어린이국악단 구성) ① 어린이국악단의 단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어린이국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객원 예술감독을 둘 수 있다.

② 객원 예술감독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③ 객원 예술감독과 단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2조(어린이국악단원 및 명예단원 선발·운영) ① 어린이국악단원은 전라남도에 소재한 초·중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개 및 특별전형을 거쳐 단장이 선발하되, 60명 이내로 한다.

② 어린이국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악부, 기악부, 무용부를 둘 수 있다.

③ 어린이국악단원은 어린이국악단의 정기 및 수시 연수지도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기량연마를 꾀하여야 한다.

④ 단장은 중학교를 졸업한 어린이국악단원 중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어린이국악단 명예단원으로 재위촉하여 필요하면 공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어린이국악단 공연) 어린이국악단은 연 1회 이상의 정기공연을 하고, 국악단 상설 공연 시 공연할 수 있다.

제24조(직무수행) ① 단장은 어린이국악단을 대표하고, 어린이국악단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객원 예술감독은 공연기획 등 공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소속 단원을 지도한다.

제25조(지도교사) ① 어린이국악단원의 지도를 위하여 기량이 우수한 도립국악단원 중에서 지도교사를 위촉한다. 다만, 작품의 성격에 따라 객원 예술감독이 추천한 전문 예술인을 지도교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지도교사는 단원의 실기지도와 공연활동 교육을 담당한다.

제26조(객원 예술감독·단원의 해촉) 객원 예술감독과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어린이국악단 설치·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2.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어린이국악단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제27조(수당의 지급) 객원 예술감독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도교사의 경우 단원의 지도에 따른 지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8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한 단장의 사무를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 전남문화예술재단(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3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단원의 정원 책정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예술감독의 모집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단원의 보수 지급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9조(실비보상)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형심사 위원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단원의 구분 및 정원

구분		정원	비고	
총 계		100		
국악 단원	계		80	
	단 장		1	
	예 술 감 독		1	
	공연단	소 계	73	
		부 감 독	(1)	상임단원중 선임
		창 악 부	21	
		기 악 부	22	
		사 물 부	12	
		무 용 부	18	
	사무 관리팀	소 계	5	
		사 무 장	1	
		일 반 사 무 담 당 (총 무 회 계)	1	
		홍 보 기 획 마 케 팅 담 당	1	
		악 기 의 상 담 당	1	
		음 향 조 명 담 당	1	
비상임 단원		20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관광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재단법인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라남도의 문화예술진흥 및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및 운영) ① 재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진흥사업

- 가.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활동의 지원
- 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 다.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활동의 지원
- 라. 문화예술진흥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
- 마. 지역문화예술·유산의 발굴·보존 및 재현·전승 활동
- 바. 예술단의 설립 및 운영
- 사.남도예술은행 등 주요 문화예술 시책 운영
- 아. 문화예술상품 개발 및 활용화 추진

2. 관광진흥사업

- 가.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 및 마케팅 활동
- 나. 관광상품 개발 및 활용화 추진
- 다.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자원의 조사 및 정책개발
- 라. 관광진흥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

3.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영

4. 문화예술·관광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그 밖에 지역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② 재단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목적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5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의 소재지
- 4. 출연금에 관한 사항
-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임원) ① 재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그 밖에 임원의 종류, 임원의 임면, 직무, 임기, 이사회의 의사결정방법 등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사무처) 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처의 기구, 조직, 직제, 복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 운영규정으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재산출연·보조)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출연 할 수 있다.

제9조(기본재산 등)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출연 또는 기부,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결의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결의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에 의한 적립금
- ② 제1항 이외의 재단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10조(재단의 기금) 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문화예술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200억원을 목표로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 출연금을 세출예산서에 반영한다.

③ 제1항의 기금 일부를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출연으로 조성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제11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관리위탁, 사용허가, 대부와 물품 소관의 전환을 할 수 있다.

제13조(공무원의 파견·겸임)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도지사는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재단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검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의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 검사결과 또는 평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위탁사무(시설포함)의 처리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운영규정) 재단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문예술법인단체, 전남문화예술재단 지원”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으로 한다.

제6장(제30조부터 제40조까지)을 모두 삭제한다.

② 「전라남도립국악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30조”를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남문화예술재단”을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전라남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전라남도 정보화의 기본방향과 관련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데이터센터”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9. “빅데이터”란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데이터의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정보화협의회”를 “정보화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정보화협의회”를 “정보화위원회”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정보화협의회)”를 “(정보화위원회)”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정보화협의회”를 “정보화위원회”로,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 제3항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7조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협의회 운영)”을 “(위원회 운영)”으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같은 조 제4항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협의회의 기능)”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하고, 제9조 각 호외의 부분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빅데이터 사업추진 및 활용

제1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ICT) 신기술산업 육성
2.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등 정보화마을 육성 사업
3. 장애인 정보화 축제 등 취약계층 정보문화 확산사업
4. 공공기관, 관광지, 터미널 등 무선인터넷 구축사업
5. 근거리 무선통신 기반 스마트 관광정보 구축사업

제12조의 제목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을 “(공공·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으로

하고, 제12조제1항 중 “민간투자”를 “공공·민간투자”로, “민간사업자”를 “공공기관, 민간사업자”로, “필요”를 “인력, 예산, 공간 등 필요”로 한다.

제13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빅데이터 기반구축 및 활용)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빅데이터 플랫폼”이라 한다) 등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빅데이터 플랫폼은 필요한 경우 성인지 통계 자료 분석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전라남도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통 등의 각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의3(빅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용 및 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빅데이터센터(이하 “빅데이터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빅데이터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2. 빅데이터 서비스 기획 및 분석지원
3. 빅데이터 공공·민간협력 사업추진 지원
4. 빅데이터 민간 활용 활성화 지원
5.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지원
6.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사무지원

③ 도지사는 빅데이터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 다음에 “제5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5장에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사업을 추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내 기초자치단체,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게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지급·정산·반환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전라남도 정보화협회의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전라남도 공고 제2016-126호

전라남도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2. 4

전라남도지사

안건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3항 단서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휴가로 한다.”를 “여성보건 휴가는 유급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도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고시 제2016-24호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한 건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시행령 제21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16. 2. 4

여수시장

1. 사업의 명칭(변경)

○ 당초 : 규불화소다 제조공장 부지조성공사

○ 변경 : 유류저장 탱크시설 부지조성공사

2. 사업시행자 성명 주소(변경없음)

가. 성명 : 남해화학(주) 강성국

나. 주소 : 여수시 여수산단로 1384(낙포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사업의 목적 : 유류저장 탱크시설 부지조성

나. 사업의 개요

○ 당초 : 117,000㎡

○ 변경 : 32,132㎡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치

○ 당초 : 여수시 낙포동 512번지 외 211필지

○ 변경 : 여수시 낙포동 498번지 외 26필지

나. 면적

○ 당초 : 117,000㎡

○ 변경 : 32,132㎡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10. 2. 25. ~ 2016.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 : 다음

7.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변경) : 게재생략

8. 실시계획승인조건(변경) : 게재생략

9. 관계도서는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2) 및 남해화학(주) 현장사무실(☎061-688-590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	1	낙포동	498	전	-	14,257	-	8,242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	2	낙포동	503	전	-	1,736	-	45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		낙포동	508	전	1,788	1,788	770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2		낙포동	509	전	502	502	196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3		낙포동	510	전	212	212	212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2 남해화학(주)
4	3	낙포동	511	전	331	14,163	331	12,535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5		낙포동	512	전	1,058	1,058	1,058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6		낙포동	513	전	56	56	56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7		낙포동	514	전	585	585	585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8		낙포동	515	전	192	192	192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9		낙포동	516	전	136	136	136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0		낙포동	517-1	전	367	367	21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1		낙포동	517-2	전	265	265	240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2		낙포동	522	전	374	374	225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3	4	낙포동	523	임	1,150	1,150	16	1,150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	5	낙포동	547	전	-	962	0	288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	6	낙포동	549	전	-	1,028	0	330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4	7	낙포동	552	묘	883	883	80	808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5		낙포동	553	전	655	655	257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6		낙포동	554	전	73	73	73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7		낙포동	555	전	33	33	33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8		낙포동	556	전	212	212	197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9		낙포동	557	전	2,251	2,251	2,200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20		낙포동	558-1	전	483	483	483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21		낙포동	558-2	전	255	255	255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22		낙포동	558-3	전	565	565	565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23		낙포동	559	전	1,435	1,435	1,435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24		낙포동	560	전	222	222	222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25		낙포동	561	전	86	86	86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26		낙포동	562	전	403	403	403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27		낙포동	563	전	532	532	532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28		낙포동	564	전	83	83	83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29		낙포동	565	전	734	734	734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30		낙포동	566	전	1,964	1,964	1,828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2	남해화학(주)
31		낙포동	567	전	73	73	73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3	남해화학(주)
32	8	낙포동	568-1	임	1,408	1,408	17	362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4	남해화학(주)
33		낙포동	568-2	전	1,970	1,970	1,487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5	남해화학(주)
34	9	낙포동	568-3	임	2,288	2,288	459	461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6	남해화학(주)
35		낙포동	568-4	전	575	575	278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7	남해화학(주)
36		낙포동	568-5	전	2,526	2,526	2,205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8	남해화학(주)
37		낙포동	569	전	595	595	595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9	남해화학(주)
38		낙포동	570	전	843	843	734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0	남해화학(주)
39	10	낙포동	577	잡	96	96	11	15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2	남해화학(주)
40	11	낙포동	578	임	546	3,214	136	2,814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3	남해화학(주)
41		낙포동	584	임	439	439	359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4	남해화학(주)
42		낙포동	584-1	임	939	939	939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5	남해화학(주)
43	12	낙포동	584-4	잡	238	1,113	124	1,113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6	남해화학(주)
44		낙포동	585	임	641	641	641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45	13	낙포동	586	전	264	264	264	264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46		낙포동	587	임	284	284	284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47	14	낙포동	588	잡	198	198	198	198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48	15	낙포동	589	전	40	40	40	40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49	16	낙포동	590	잡	142	142	142	142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50		낙포동	591-1	잡	403	403	403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51	17	낙포동	591-3	도	23	46	23	46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52	18	낙포동	592-10	대	290	290	290	290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53		낙포동	592-11	잡	48	48	48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54		낙포동	595-2	잡	12	12	12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55	19	낙포동	596	대	123	123	123	123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56		낙포동	596-1	잡	155	155	155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57		낙포동	597-2	잡	33	33	33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58		낙포동	598	임	347	347	347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59		낙포동	598-2	임	18	18	18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2	남해화학(주)
60		낙포동	598-5	잡	35	35	35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3	남해화학(주)
61		낙포동	598-6	잡	66	66	66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4	남해화학(주)
62		낙포동	598-7	잡	109	109	109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63		낙포동	598-10	잡	142	142	142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64		낙포동	598-12	잡	250	250	250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65	20	낙포동	931-1	전	172	172	172	92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66		낙포동	931-2	대	63	63	63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67		낙포동	931-3	도	23	23	23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68		낙포동	931-4	도	13	13	13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69	21	낙포동	932-1	잡	60	232	60	232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70		낙포동	932-2	답	63	63	63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71	22	낙포동	932-3	도	13	13	13	13	여수시 삼일면 낙포리 1057	유 승운
72	23	낙포동	932-4	도	109	132	109	3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73		낙포동	932-5	답	7	7	7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74		낙포동	933-1	잡	172	172	172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75		낙포동	933-4	도	23	23	23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76		낙포동	933-7	답	507	507	507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77		낙포동	950-3	도	741	741	741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78		낙포동	955-1	답	436	436	247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79		낙포동	985	답	1,331	1,331	820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80		낙포동	988-6	전	424	424	319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2	남해화학(주)
81		낙포동	991	답	631	631	631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82		낙포동	991-1	답	575	575	575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83		낙포동	991-2	전	1,686	1,686	1,686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84		낙포동	991-3	답	307	307	307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85	낙포동	991-4	전	516	516	516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86	낙포동	991-5	전	1,250	1,250	1,250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87	낙포동	991-6	답	2,698	2,698	2,698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88	낙포동	991-7	전	1,706	1,706	1,706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89	낙포동	992	답	635	635	635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90	낙포동	993	답	122	122	122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91	낙포동	994	답	106	106	106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92	낙포동	995	답	585	585	585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93	낙포동	996	답	202	202	202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94	낙포동	997	답	235	235	235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95	낙포동	998	답	3,088	3,088	3,088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96	낙포동	998-1	답	1,765	1,765	1,765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97	낙포동	999	전	384	384	384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98	낙포동	1000-2	잡	3,467	3,467	3,467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99	낙포동	1002	유	8,417	8,417	8,417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00	낙포동	1003	전	79	79	79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01	낙포동	1004	묘	645	645	645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02	낙포동	1005	전	132	132	132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03	낙포동	1006	전	264	264	264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04	낙포동	1007	전	1,788	1,788	1,788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05	낙포동	1008	답	1,640	1,640	1,640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06	낙포동	1008-1	잡	453	453	453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07	낙포동	1009	답	2,030	2,030	2,030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08	낙포동	1010	전	512	512	365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09	낙포동	1010-1	전	2,172	2,172	445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10	낙포동	1011	전	407	407	353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11	낙포동	1011-3	전	1,425	1,425	67	-		전라남도
112	낙포동	1012-1	전	780	780	645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13	낙포동	1014	답	169	169	169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14	낙포동	1015	전	579	579	579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115	낙포동	1016	답	760	760	760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16	낙포동	1016-1	잡	512	512	512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17	낙포동	1016-2	전	645	645	645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18	낙포동	1016-3	잡	238	238	238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19	낙포동	1016-4	답	106	106	106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20	낙포동	1017-1	잡	99	99	99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21	낙포동	1017-2	전	1,398	1,398	1,398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22	낙포동	1017-3	전	1,319	1,319	1,319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23	낙포동	1018-1	전	843	843	843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24	낙포동	1018-2	묘	241	241	241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25	낙포동	1019	전	116	116	116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26	낙포동	1020	전	122	122	122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27	낙포동	1021	답	248	248	248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28	낙포동	1022	전	185	185	185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29	낙포동	1023	전	73	73	73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30	낙포동	1024	답	2,893	2,893	2,893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31	낙포동	1027	전	970	970	970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32	낙포동	1027-2	구	70	70	70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33	낙포동	1027-8	전	22	22	22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34	낙포동	1027-9	구	25	25	25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35	낙포동	1030	잡	96	96	96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36	낙포동	1031-1	답	853	853	853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37	낙포동	1031-2	답	331	331	331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38	낙포동	1031-3	답	446	446	446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39	낙포동	1031-5	잡	598	598	598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40	낙포동	1031-6	도	7	7	7	-	여수시 삼일면 낙포리 1031	박기호
141	낙포동	1031-7	도	3	3	3	-	여수시 삼일면 낙포리 1031	박기호
142	낙포동	1031-9	도	76	76	76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43	낙포동	1031-10	답	591	591	591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44	낙포동	1032	전	2,149	2,149	2,149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145	낙포동	1033	전	69	69	69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46	낙포동	1034	전	691	691	691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47	낙포동	1035	답	390	390	390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48	낙포동	1036	전	614	614	614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49	낙포동	1036-1	전	1,393	1,393	1,393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50	낙포동	1037	묘	192	192	192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51	낙포동	1038	전	1,405	1,405	1,177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52	낙포동	1039	전	66	66	66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53	낙포동	1040-1	전	86	86	62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54	낙포동	1041	전	119	119	29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55	낙포동	1043	전	1,184	1,184	114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56	낙포동	1044	전	337	337	102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57	낙포동	1045	전	3,084	3,084	3,084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58	낙포동	1046	잡	456	456	456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59	낙포동	1047	잡	33	33	33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60	낙포동	1048	잡	83	83	83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61	낙포동	1049-1	전	188	188	188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62	낙포동	1049-2	도	13	13	13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63	낙포동	1050-1	잡	235	235	235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64	낙포동	1050-2	도	3	3	3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65	낙포동	1050-3	도	3	3	3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66	낙포동	1051-1	잡	317	317	317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67	낙포동	1051-2	도	7	7	7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68	24 낙포동	1052	잡	311	4,041	311	1,108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69	낙포동	1053	잡	188	188	188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70	낙포동	1054	잡	182	182	182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71	낙포동	1055-1	답	704	704	704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72	낙포동	1055-2	도	17	17	17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73	낙포동	1055-3	도	116	116	116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74	낙포동	1055-4	답	23	23	23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175		낙포동	1056-1	잡	36	36	36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76		낙포동	1056-2	잡	198	198	198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77		낙포동	1056-3	도	10	10	10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78		낙포동	1057	잡	975	975	975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79		낙포동	1058	전	46	46	46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80		낙포동	1059	잡	23	23	23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81		낙포동	1060-1	잡	380	380	380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82		낙포동	1060-2	잡	678	678	678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83		낙포동	1061	잡	132	132	132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84	25	낙포동	1062	잡	175	3,408	175	107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85	26	낙포동	1063	전	73	73	73	15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86		낙포동	1064	잡	1,418	1,418	1,418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87		낙포동	1065	전	112	112	112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88		낙포동	1066	잡	165	165	165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89		낙포동	1067	잡	354	354	354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90		낙포동	1068	잡	152	152	152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91		낙포동	1069	잡	215	215	215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92		낙포동	1070	잡	683	683	683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93		낙포동	1070-1	잡	411	411	411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94		낙포동	1071	전	251	251	251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95		낙포동	1072	전	327	327	254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96		낙포동	1074	전	337	337	13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97		낙포동	1075	전	169	169	123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98		낙포동	1076	전	119	119	119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199		낙포동	1077	전	40	40	40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200		낙포동	1078-1	전	1,164	1,164	259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201		낙포동	1233	도	56	56	56	-	국유지	국(건설부)
202		낙포동	1263-28	천	1,976	1,976	1,489	-	국유지	국(건설부)
203		낙포동	1263-29	천	1,238	1,238	1,238	-	국유지	국(건설부)
204		낙포동	1264-16	잡	25	25	25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205	27	낙포동	1264-32	도	4,676	4,676	2,055	1,296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206		낙포동	산343-6	임	2,862	2,862	2,108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207		낙포동	산344-5	천	496	496	418	-	국유지	국(건설부)
208		낙포동	산344-7	임	4,441	4,441	755	-	시유지	여수시
209		낙포동	산348-1	임	694	694	694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210		낙포동	산348-14	임	1,720	1,720	864	-	시유지	여수시
211		낙포동	산348-15	임	5,877	5,877	3,403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212		낙포동	산349-8	임	4,359	4,359	3,778	-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남해화학(주)
계					145,258	187,797	117,000	32,132		

여수시 공고 제2016-213호

여수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여수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2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준공검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2. 4

여수시장

1. 사업시행지 위치 :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94-88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여수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나. 명 칭 : 돌산공원 진입로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가. 면 적 : 7,954.7㎡
 - 나. 규 모 : L= 388m, B=10m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여수시장
 - 나. 주 소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일
 - 가. 착수년월일 : 2015. 4. 23.(실시계획인가고시일)
 - 나. 준공년월일 : 2015. 12. 29.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공원과(☎061-659-4934) 및 도시계획과(☎061-659-4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공고 제2016-219호

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2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준공검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2. 4

여수시장

1. 사업시행지 위치 : 여수시 안산동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나. 명 칭 : 심곡마을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가. 면 적 : 4,388㎡
 - 나. 규 모 : L=280m, B=11~12m(미만)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여수시장
 - 나. 주 소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일
 - 가. 착수년월일 : 2011. 3. 4.(실시계획인가고시일)
 - 나. 준공년월일 : 2015. 12. 17.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로과(☎061-659-4072) 및 도시계획과(☎061-659-4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고시 제2016-18호

순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순천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2. 4

순천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순천시 남정동, 오천동, 덕월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위 치	명 칭	종류	규 모	사업시행자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주 소	성 명	
순천시 오천동 948일원	오천지구 진입도로(지현길) 확장사업	도로 (소로 1-66)	A=4,493㎡ L=316m B=10m	순천시 장명로 30	순천시장 (도시과장)	실시계획인가일 ~ 2017. 12. 31.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다음
4. 관계도서는 순천시 도시과(☎061-749-631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편입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	동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11,036	4,493						
1	순천시	남정동	515-4	도	1,019	639		국토교통부				
2	순천시	남정동	485-1	도	2,460	138		국토교통부				
3	순천시	남정동	511-7	도	211	2		국토교통부				
4	순천시	오천동	860-4	대	26	26		순천시				
5	순천시	오천동	860	대	230	230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311-13 메트로타워 16006	이홍철				
6	순천시	오천동	860-5	대	129	129	순천시 남정1길 10-1(인제동)	장미자				
7	순천시	오천동	948	도	1,798	1,798		국토교통부				
8	순천시	오천동	882-4	도	62	62	광주시 북구 문흥동 921 대주맨션 301-101	고영동				
9	순천시	오천동	881-1	전	46	46		순천시				
10	순천시	오천동	883-1	대	113	113	순천시 남정동 529-25	이기심				
11	순천시	오천동	880-6	전	69	69		순천시				
12	순천시	오천동	882-2	도	467	467		국토교통부				
13	순천시	오천동	880-2	도	208	208		국토교통부				
14	순천시	오천동	879-2	철	1,841	139		국토교통부				
15	순천시	오천동	886-4	도	40	40		국토교통부				
16	순천시	오천동	883-3	대	99	99	부산시 북구 주례동 1231-52	박문규				
17	순천시	오천동	884-1	전	159	159	부산시 북구 주례동 1231-52	박문규 외9인				
18	순천시	덕월동	1325	구	2,059	129		농림수산식품 부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 편입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소유자	
	시	동					주소	성명
1	순천시	오천동	860	본건물	스레트+블록	194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311-13 메트로타워 16006	이홍철
2	순천시	오천동	860-4	본건물	샌드위치판넬	44		순천시
3	순천시	덕월동	472	본건물	스레트+블록	187.8	순천시 덕월동 472	김유도
4	순천시	덕월동	470-1	창고	스레트+블록	70.8		순천시 향교재산
5	순천시	덕월동	469	창고	스레트+블록	70.8	보성군 벌교읍 장좌리 511	김찬경
6	순천시	덕월동	468-1	창고	스레트+블록	63.8	보성군 벌교읍 장좌리 511	김찬경
7	순천시	오천동	884-1	본건물	슬래브+블록	124.8	부산시 북구 주례동 1231-52	박문규 외 9인
8	순천시	오천동	886-5	본건물	스레트+블록	60	순천시 풍덕동 925-5	정관옥

순천시 공고 제2016-143호

순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사전 열람 공고

순천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인가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전열람 공고합니다.

2016. 2. 4

순천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순천시 생목동 16-1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규모(변경)

위 치	명 칭	종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시설명	규 모		주소	성명	
생목동 16-17번지 일원	생목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도로	소로 2-206	(당초) A = 665㎡ L = 80m B = 8m	(변경) A = 668㎡ L = 80m B = 8m	순천시 대석3길 3-26, 3층(연향동)	(주)삼덕건설 대표 양행열	2015. 12. 10. ~ 2018. 6. 30.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변경) : 다음
4. 변경사유 : 사업부지 내 토지분할에 따른 사업면적 증감 및 토지 세목조서 변경사항 반영
5.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 순천시 도시과(☎061-749-631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오니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세목 조서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비고	
	시	동					주 소		성 명		
합 계			14필지		당초	9,091	665				
			변경		7,497	668					
1	순천시	생목동	16-17		대	7	7	당초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흥길 27	고명신	
								변경	부산광역시 남구문현금로 40 (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 보증공사	
2	순천시	생목동	당초	16-9	대	490	25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흥길 27		고명신	
			변경	16-19		24	24				
3	순천시	생목동	당초	16-14	도	75	21	전라남도 순천시 생목안길 54(생목동)		강길자	
			변경	16-21		20	20				
4	순천시	생목동	당초	16-8	답	135	6	전라남도 순천시 생목안길 54(생목동)		강길자	
			변경	16-18		5	5	부산광역시 남구문현금로 40 (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 보증공사	
5	순천시	생목동	16-12		도	251	251	공(순천시)		공유지	
6	순천시	생목동	당초	16-15	전	31	27	전라남도 순천시 생목동 16-2		박종효	
			변경	16-22		27	27	부산광역시 남구문현금로 40 (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 보증공사	
7	순천시	생목동	당초	16-11	전	57	7	전라남도 순천시 생목동 16-2		박종효	
			변경	16-20		7	7	부산광역시 남구문현금로 40 (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 보증공사	
8	순천시	생목동	198		도	6,827	23	국(국토교통부)		국유지	
9	순천시	생목동	당초	8-110	전	238	89	국(기획재정부)		국유지	
			변경	8-120		90	90				
10	순천시	생목동	당초	8-83	전	196	21	국(기획재정부)		국유지	
			변경	8-119		20	20				
11	순천시	생목동	8-116		전	35	10	당초	국(기획재정부)	국유지	
								변경	전라남도 순천시 이수로 239-12	김정숙	
12	순천시	생목동	8-111		전	45	45	국(기획재정부)		국유지	
13	순천시	생목동	당초	8-82	전	185	109	국(기획재정부)		국유지	
			변경	8-118		115	115				
14	순천시	생목동	당초	8-46	전	519	24	국(기획재정부)		국유지	
			변경	8-117		24	24				

나주시 고시 제2016-12호

나주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나주시 다도면 송학리 186-1번지 일원 (주)남부지엔씨, (주)남부환경개발 공동사업 및 건축물 증축의 나주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과 관련 준공예정일 연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16. 2. 4

나주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 치 : 전남 나주시 다도면 송학리 186-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나주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 명 칭 : (주)남부지엔씨, (주)남부환경개발 공동사업 및 건축증축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5,288.0	100.0	
폐 기 물 처리시설	소 계	3,179.7	20.8	
	소각동시설	431.0	2.8	
	파쇄선별시설	200.0	1.3	
	원료야적장	1,090.0	7.1	
	석분, 쇄석야적장	561.2	3.7	
	재활용시설	397.5	2.6	
	보관창고	500.0	3.3	
관리편익 시 설	소계	754.3	5.0	
	관리시설	608.1	4.0	
	운동시설	146.2	1.0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공공시설	소계	2,308.0	15.1	
	도로	2,111.0	13.8	
	주차장	197.0	1.3	
녹 지	소계	9,046.0	59.1	
	녹지	9,046.0	59.1	

○ 건축물 규모

구분	용 도	층수	건축면적	건축 연면적	비고
합계	11동		1,984.21	2,177.51	증1동
가동	재활용 공간	1	397.50	397.50	주1동
나동	사무실	2	230.04	371.92	주2동
다동	콜재 실험실	1	18.00	18.00	부1동
라동	창고	1	287.50	287.50	부2동
마동	창고	2	22.50	36.00	부3동
바동	창고	1	135.91	135.91	부4동
사동	창고	1	27.38	24.00	부5동
아동	창고	3	37.38	78.68	부6동
자동	창고	1	28.00	28.00	부7동
차동	창고	1	300.00	300.00	부8동
카동	창고	1	500.00	500.00	부9동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남부지엔씨, (주)남부환경개발

○ 주 소 : 전남 나주시 다도면 송학리 190번지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 초 : 2008. 3. 5. ~ 2015. 6. 30.

○ 변 경 : 2008. 3. 5. ~ 2016. 6. 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 다음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8. 실시계획 관계도서 : 게재생략(나주시 도시과에 비치)

9. 인가조건 : 당초 실시계획인가조건(나주시 고시 제2015-102호) 준수 : 게재생략

10. 변경사유

○ 준공예정일 연장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도시과(061-339-89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연 번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m ²)		소유자	
	면	리	지번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1	다도	송학	185-1	공장용지	1,160	1,160	나주시 다도면 다남로 107	주식회사 남부환경개발
2			186-5	공장용지	1,677	1,677	나주시 다도면 송학리 190번지	주식회사 남부지엔씨
3			186-6	공장용지	172	172		
4			190	공장용지	1,035	1,035		
5			191	잡 종 지	1,405	1,405		
6			192	잡 종 지	780	780		
7			193	잡 종 지	601	601	나주시 다도면 다남로 107	주식회사 남부환경개발
8			193-3	잡 종 지	259	259	나주시 다도면 송학리 190번지	주식회사 남부지엔씨
9			193-1	잡 종 지	1,840	1,840	나주시 다도면 다남로 107	주식회사 남부환경개발
10			193-5	잡 종 지	1,405	1,405		
11			193-4	잡 종 지	537	537		
12			193-2	잡 종 지	3,151	3,151		
13			171-2	구 거	1,327	83	국유지	농림축산 식품부
14			1122-4	구 거	1,797	1,068		
15			156-1	도 로	6,807	115		
계		15필지			23,953	15,288		

나주시 공고 제2016-131호

나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서류열람 공고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230-1번지 일원 금천우영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나주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 2류201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를 열람 공고합니다.

2016. 2. 4

나주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 치 : 전남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230-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나주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 2류201호선)사업

○ 명 칭 : 금천우영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면 적 : 952㎡

○ 규 모 : L=121m, B=8m

규 모				사용 형태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전체 연장	기시행 연 장	금회시행 연 장			
소로	2	201	8	일반 도로	국지 도로	211	90	121	대로1-1호선 춘곡리 225-17전	중로3-6호선 원곡리 230-9도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나주시장(도시과)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16. 2.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19.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 다음

7. 실시계획 관계도서 : 게재생략(도시과 비치)

8. 열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간

9. 열람 및 의견 제출장소 : 나주시 도시과(☎ 061-339-8975, 8983 Fax 061-339-282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 토지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면적(m ²)		소 유 자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1	225-45	전	91	79	최금순외1인	전남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226-1	
2	226-13	대	4	4	서안식	전남 나주시 금천면 광탄길 10	
3	226-14	답	123	123	서태원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226	
4	226-12	답	136	136	최금순	전남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226-1	
5	227-1	과	1,405	202	재단법인광주구 천주교회유지재단	광주시 북구 임동 5-32	
6	230-1	답	54	54	송장렬	전남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247	
7	230-14	답	1,114	343	송내문	광주시 서구 진월동 333-2	
8	230-9	도	601	8	나주시		
9	228	대	2,624	3	(주)우영건설	광주시 서구 방림동 21-3	
계	9필지		6,152	952			

○ 지장물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장물 종류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225-45	전	판넬조(빔) 가설건물	최금순외1인	금천면 원곡리226-1	
계	1개소					

나주시 공고 제2016 - 132호

나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서류열람 공고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196-5번지 일원 남평성원아파트~지석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를 위한 나주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 2류4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를 열람 공고합니다.

2016. 2. 4

나주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 치 : 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196-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나주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 2류4호선)사업

○ 명 칭 : 남평성원아파트~지석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면 적 : 726㎡

○ 규 모 : L=80m, B=8m

규 모				사용 형태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전체 연장	기시행 연 장	금회시행 연 장			
소로	2	4	8	일반 도로	국지 도로	194	114	80	소로2-1호선 남평리 197-3제	소로2-13호선 남평리 181-3대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나주시장(도시과)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16. 2.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19.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 다음

7. 실시계획 관계도서 : 게재생략(도시과 비치)

8. 열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간

9. 열람 및 의견 제출장소 : 나주시 도시과(☎ 061-339-8975, 8983 Fax 061-339-2826)

토지 조서

번호	토지 소재지		토지	지 적(㎡)		권 리 자		비 고
	주 소	번 지		총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173-6	전	2,346	39	나주시 남평읍 남평1로19. 105호 (성원아파트)	강성태	8316/469200
						나주시 남평읍 남평2로30-2 에이동 303호(남평아파트)	김덕원	4158/469200
						나주시 산포면 내기3길 109	김성기	15824/469200
						나주시 금천면 광암리 366	김소동	3465/469200
						나주시 남평읍 남평1로19. 104호 (성원아파트)	김순란	8316/469200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87	김연희	5833/469200
						나주시 남평읍 남평1로 19. 302호 (성원아파트)	김영남	11666/469200
						나주시 남평읍 남평1로 19. 703호 (성원아파트)	김옥례	8316/469200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150	김용식	8316/469200
						나주시 남평읍 남평3로 35. 1106호 (새봄아파트)	김인숙	8316/469200
						나주시 남평읍 남평1로 19. 106호 (성원아파트)	김춘임	8316/469200
						나주시 남평읍 남평1로 19. 603호 (성원아파트)	나귀님	8316/469200
						나주시 남평읍 남평1로 19. 306호 (성원아파트)	백은자	8316/469200
						나주시 남평읍 인암2길6-19.	서경복	8316/469200
						나주시 남평읍 남평1로 19. 604호 (성원아파트)	서용애	8316/469200
						나주시 남평읍 남평1로 19. 303호 (성원아파트)	신흥석	8316/469200
						나주시 남평읍 남평1로 19. 206호 (성원아파트)	신성체	8316/469200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186	신흥의	8316/469200
						나주시 남평읍 남평1로 19. 704호 (성원아파트)	양달승	8316/469200
						나주시 남평읍 광이리 33-8	양승우	8316/469200
						서울 노원구 동일로 227길 85. 1113동 1002호(상계동 주공아파트)	윤경숙	11666/469200

번호	토지 소재지		토지	지 적(㎡)		권 리 자		비 고
	주 소	번 지		총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451	윤면호	8316/469200
						나주시 금천면 동악리 65	이기채	8316/469200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87	이대오	5833/469200
						나주시 남평읍 남평1로 19. 602호 (성원아파트)	이대희	11666/469200
						나주시 남평읍 남평1로 19. 102호 (성원아파트)	이동규	15824/469200
						나주시 남평읍 남평1로 19. 202호 (성원아파트)	이복란	11666/469200
						나주시 남평읍 남평1로 19. 504호 (성원아파트)	이숙자	8316/469200
						나주시 남평읍 남평1로 19. 203호 (성원아파트)	이승몽	6930/469200
						광주시 남구 백양로51번길 6-1 (백운동)	이점숙	8316/469200
						나주시 남평읍 남평1로 19. 507호 (성원아파트)	이종림	8316/469200
						완도군 고금면 덕동리 487	이화순	5753/469200
						나주시 남평읍 남평1로 19. 606호 (성원아파트)	장동길	8316/469200
						나주시 남평읍 수원리 372	장정석	15538/469200
						나주시 남평읍 교원리 791	장중배	8316/469200
						광주시 남구 양림동 226-25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도회유지재단	15824/469200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66	재단법인 제칠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유지 재단	15644/469200
						나주시 남평읍 남평1로 19. 706호 (성원아파트)	정광모	8316/469200
						나주시 남평읍 남평1로 19. 302호 (성원아파트)	정광희	11666/469200
						나주시 남평읍 남평1로 19. 503호 (성원아파트)	정삼채	17312/469200
						광주시 서구 풍암1로 53,105동 602호 (풍암동,현대삼환아파트)	정순영	4158/469200

번호	토지 소재지		토지	지 적(㎡)		권 리 자		비 고
	주 소	번 지		총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나주시 남평읍 남평1로 19. 305호 (성원아파트)	주경만	8316/469200
						광주시 남구 월산동 619-22	주식회사 경동물산	27330/469200
						인천시 인구수 능허대로79번길 30, 108동 1704호(옥련동,럭키송도아파트)	최서윤	8316/4692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170번길 17,102동 602호 (인계동,인계프로지오아파트)	최한길	8316/469200
						나주시 남평읍 남평1로 67-1	함오조	8316/469200
						나주시 남평읍 세암로 1771-6	황길연	11666/469200
						나주시 남평읍 남평1로 19. 204호 (성원아파트)	황병순	8316/4692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현로52번길 87,제파동호(가경동)	황재호	6930/469200
2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268	도	25,449	1		건설부	
3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196-5	대	150	150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196-3	김명숙	남평농업 협동조합근저당
4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196-4	전	451	451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196-3	김명숙	남평농업 협동조합근저당
5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209-5	전	34	34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196-3	김명숙	남평농업 협동조합근저당
6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209-3	제	3,938	51		건설부	
계				32,368	726			

지장물 조서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수량)		편입 (수량)		토지소유자		지장물소유자			비고
	읍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및 내용	
1	남평	196-5	통신주		1	EA	1	EA	김명숙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196-3	김명숙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196-3		사 유 지
2	남평	173-6	구조물	조립식	1	EA	1	EA	정복덕외 다수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173-6 성원아파트502				
3	남평	196-5	가로등		1	EA	1	EA	김명숙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196-3	김명숙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196-3		
4	남평	196-4	전력주		1	EA	1	EA	김명숙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196-3	김명숙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196-3		
5	남평	196-4	통신주		1	EA	1	EA	김명숙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196-3	김명숙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196-3		
6	남평	209-5	통신주		1	EA	1	EA	김명숙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196-3	김명숙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196-3		

곡성군 고시 제2016-8호

곡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곡성군 고시 제2013-46호로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된 곡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곡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016. 2. 4

곡성군수

1. 곡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조서 : 다음
2. 곡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도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 곡성군 경제과(☎061-360-830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곡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죽곡 태평지구		137,024.0	-	137,024.0	복합형
⑦	죽곡 태평지구	곡성군 죽곡면 태평리 786일원	137,024.0	감)65,728.3	71,295.7	주거형
⑦	죽곡 태평지구	곡성군 죽곡면 태평리 794일원	-	증)65,728.3	65,728.3	관광 휴양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변경	⑦	죽곡 태평지구	•위치 : 786번지 일원 •면적 - 137,024m² → 71,295.7m² 감) 65,728.3m²	•기존 주거형지구단위계획구역 일부를 숙박시설 운영을 위하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구역으로 변경 하고자함
신설	⑦	죽곡 태평지구	•위치 : 794번지 일원 •면적 - 0m² → 65,728.3m² 증) 65,728.3m²	•기존 주거형지구단위계획구역 일부를 숙박시설 운영을 위하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구역을 신 설 하고자함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구 분		면 적 (m ²)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전체	구역별	
복합형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주거형 + 관광 휴양형)	합계	137,024.0	-	137,024.0	100.0	100.0	
	주거용지	43,219.9	감)21,259.8	21,960.1	16.0	16.0	① ~ ④
	관광휴양시설용지	-	증)21,889.8	21,889.8	15.9	15.9	-
	숙박시설	-	증)21,889.8	21,889.8	15.9	15.9	⑤ ~ ⑨
	공공시설용지	26,923.3	감)630	26,293.3	19.2	19.2	-
	커뮤니티센터	2,787.2	-	2,787.2	2.0	2.0	⑩ - 1
	마을하수처리장	651	-	651	0.5	0.5	⑪ - 1
	주차장1	660	-	660	0.5	0.5	⑫ - 1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전체	구역별	
복합형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주거형 + 관광 휴양형)		주차장2	442.1	-	442.1	0.3	0.3	[13] - 1
		문화시설	2,144	감)813	1,331	1.0	1.0	[14] - 1
		도로,보행자	20,239	증)183	20,422	14.9	14.9	-
		녹지용지	66,880.8	-	66,880.8	48.9	48.9	-
		햇살공원	1,200	-	1,200	0.9	0.9	[15] - 1
		중앙광장	1,444.1	-	1,444.1	1.1	1.1	[13] - 2
		조성녹지	64,236.7	-	64,236.7	46.9	46.9	-
주거형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소계	137,024.0	감)65,728.3	71,295.7	52.0	100.0	
		주거용지	43,219.9	감)21,259.8	21,960.1	16.0	30.8	[1] ~ [4]
		공공시설용지	26,923.3	감)14,353.7	12,569.6	9.2	17.6	-
		커뮤니티센터	2,787.2	감)2,787.2	-	-	-	-
		마을하수처리장	651	감)651	-	-	-	-
		주차장1	660	감)660	-	-	-	-
		주차장2	442.1	-	442.1	0.3	0.6	[13] - 1
		문화시설	2,144	감)813	1,331	1.0	1.9	[14] - 1
		도로,보행자	20,239	감)9,442.5	10,796.5	7.9	15.1	-
		녹지용지	66,880.8	감)30,114.8	36,766.0	26.8	51.6	-
		햇살공원	1,200	감)1,200	-	-	-	-
		중앙광장	1,444.1	-	1,444.1	1.1	2.1	[13] - 2
		조성녹지	64,236.7	감)28,914.8	35,321.9	25.7	49.5	-
관광 휴양형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소계	-	증)65,728.3	65,728.3	48.0	100.0	
		관광휴양시설용지	-	증)21,889.8	21,889.8	15.9	33.3	-
		숙박시설	-	증)21,889.8	21,889.8	15.9	33.3	[5] ~ [9]
		공공시설용지	-	증)13,723.7	13,723.7	10.0	20.9	-
		커뮤니티센터	-	증)2,787.2	2,787.2	2.0	4.3	[10] - 1
		마을하수처리장	-	증)651	651	0.5	1.0	[11] - 1
		주차장1	-	증)660	660	0.5	1.0	[12] - 1
		도로,보행자로	-	증)9,625.5	9,625.5	7.0	14.6	-
		녹지용지	-	증)30,114.8	30,114.8	22.1	45.8	-
		햇살공원	-	증)1,200	1,200	0.9	1.8	[15] - 1
		조성녹지	-	증)28,914.8	28,914.8	21.2	44.0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1) 교통시설

가) 도로(변경없음)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38	809	소로2-1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354	중로2-1	소로2-5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112	중로2-1	816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124	중로2-1	800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159	중로2-1	800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115	소로1-1	803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156	소로1-1	803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124	소로1-1	800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7	8	국지도로	144	소로1-1	산105-4	일반도로	

나) 주차장(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	1,102.1	-	1,102.1		
기 정	①	주차장	796 일원	660.0	-	660.0	곡성군 제2009-9호 '09.2.13	
기 정	②	주차장	787 일원	442.1	-	442.1		

2) 공간시설

다) 녹지(변경없음)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		3,851.8	-	3,851.8		
기 정	①	녹지	완충녹지	818 일원	1,609.8	-	1,609.8	곡성군 제2009-9호 '09.2.13	
기 정	②	녹지	완충녹지	808 일원	2,242.0	-	2,242.0		

라) 공원(변경없음)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햇살 공원	소공원	808 일원	1,200.0	-	1,200.0	곡성군 제2009-9호 '09.2.13	

마) 광장(변경없음)

○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중앙 광장	근린광장	787-1일원	1,444.1	-	1,444.1	곡성군 제2009-9호 '09.2.13	

3) 환경기초시설

가) 하수종말처리장(변경없음)

○ 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마을 하수처리장	797 일원	651	-	651	곡성군 제2009-9호 '09.2.13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1) 총괄조서(변경)

가구 및 획지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구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137,024.0	감65,728.3	71,295.7	
주거용지	① ~ ⑨	① ~ ④	-	43,219.9	감21,259.8	21,960.1	단독주택
녹지용지	⑮ - 1	-	-	1,200.0	감1,200	-	-
	⑬ - 2	⑬ - 2	-	1,444.1	-	1,444.1	중앙광장
	-	-	-	64,236.7	감28,914.8	35,321.9	일반녹지
공공시설 용지	⑩ - 1	-	-	2,787.2	감2,787.2	-	커뮤니티센터
	⑪ - 1	-	-	651.0	감651.0	-	하수종말처리장
	⑫ - 1	-	-	660.0	감660.0	-	주차장1
	⑬ - 1	⑬ - 1	-	442.1	-	442.1	주차장2
	⑭ - 1	⑭ - 1	-	2,144.0	감813.0	1,331.0	문화시설
	-	-	-	20,239.0	감9,442.5	10,796.5	도로, 보행자도로

2) 결정(변경) 조서

가) 주거용지(변경)

가 구				획 지				비 고
번 호	면 적(m ²)			번 호	면 적(m ²)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용지	43,257.4	감)21,297.3	21,960.1	-	43,257.4	감)21,297.3	21,960.1	
①	4,659	증)630	5,289	1	356	감)92	264	•단독주택 •필지 분할은 불허하 며, 2필지 이상의 합 벽건축 가능
				2	331	감)67	264	
				3	331	감)67	264	
				4	331	감)68	263	
				5	331	감)66	265	
				6	331	감)65	266	
				7	331	감)64	267	
				8	331	감)64	267	
				9	331	감)65	266	
				10	331	감)67	264	
				11	331	감)67	264	
				12	331	감)67	264	
				13	331	감)68	263	
				14	331	감)67	264	
				15	-	증)264	264	
				16	-	증)264	264	
				17	-	증)264	264	
				18	-	증)264	264	
				19	-	증)264	264	
				20	-	증)264	264	
②	5,401.3	-	5,401.3	1	354.6	-	354.6	•단독주택 •필지 분할 불허
				2	352.9	-	352.9	
				3	353.4	-	353.4	
				4	355.5	-	355.5	
				5	354.6	-	354.6	
				6	355.1	-	355.1	
				7	361.1	-	361.1	
				8	354.8	-	354.8	
				9	311.7	-	311.7	
				10	324.1	-	324.1	
				11	318.4	-	318.4	
				12	319.2	-	319.2	
				13	320.6	-	320.6	
				14	324.4	-	324.4	
				15	322.4	-	322.4	
				16	318.5	-	318.5	

가 구				획 지				비 고
번 호	면 적(m ²)			번 호	면 적(m ²)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3	6,255.7	-	6,255.7	1	336.3	-	336.3	•단독주택 •필지 분할 불허
				2	340.1	-	340.1	
				3	329	-	329	
				4	329.2	-	329.2	
				5	335.9	-	335.9	
				6	343	-	343	
				7	343.7	-	343.7	
				8	344.7	-	344.7	
				9	350.2	-	350.2	
				10	333.2	-	333.2	
				11	327.8	-	327.8	
				12	325.7	-	325.7	
				13	319.1	-	319.1	
				14	317.1	-	317.1	
				15	315.7	-	315.7	
				16	314.1	-	314.1	
				17	315.8	-	315.8	
				18	316.9	-	316.9	
				19	318.2	-	318.2	
4	50,14.1	-	5,014.1	1	432	-	432	
				2	385	-	385	
				3	344.7	-	344.7	
				4	325.1	-	325.1	
				5	320.6	-	320.6	
				6	321.1	-	321.1	
				7	314.7	-	314.7	
				8	324.2	-	324.2	
				9	328.5	-	328.5	
				10	320.9	-	320.9	
				11	325.6	-	325.6	
				12	314.4	-	314.4	
				13	318.8	-	318.8	
				14	314.4	-	314.4	
				15	324.1	-	324.1	
5	1,976.5	감)1,976.5	-	1	319.6	감)319.6	-	
				2	321.7	감)321.7	-	
				3	315.8	감)315.8	-	
				4	321.4	감)321.4	-	
				5	333.7	감)333.7	-	
				6	364.3	감)364.3	-	

가 구				획 지				비 고
번 호	면 적(m ²)			번 호	면 적(m ²)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6	4,343.9	감)4,343.9	-	1	331.3	감)331.3	-	
				2	332.1	감)332.1	-	
				3	335.1	감)335.1	-	
				4	347.1	감)347.1	-	
				5	339.6	감)339.6	-	
				6	337.3	감)337.3	-	
				7	328.8	감)328.8	-	
				8	307.5	감)307.5	-	
				9	319.9	감)319.9	-	
				10	330.5	감)330.5	-	
				11	343.2	감)343.2	-	
				12	344.1	감)344.1	-	
				13	347.4	감)347.4	-	
7	5,282.7	감)5,282.7	-	1	267.8	감)267.8	-	
				2	267.5	감)267.5	-	
				3	262.9	감)262.9	-	
				4	266.3	감)266.3	-	
				5	268.9	감)268.9	-	
				6	270.7	감)270.7	-	
				7	275.7	감)275.7	-	
				8	270.9	감)270.9	-	
				9	271.2	감)271.2	-	
				10	265.3	감)265.3	-	
				11	262.7	감)262.7	-	
				12	254.5	감)254.5	-	
				13	266.1	감)266.1	-	
				14	257.5	감)257.5	-	
				15	259.8	감)259.8	-	
				16	257.6	감)257.6	-	
				17	256.5	감)256.5	-	
				18	257.5	감)257.5	-	
				19	255.2	감)255.2	-	
				20	268.1	감)268.1	-	
8	5,419.2	감)5,419.2	-	1	267.8	감)267.8	-	
				2	267.7	감)267.7	-	
				3	267.7	감)267.7	-	
				4	263.5	감)263.5	-	
				5	263.3	감)263.3	-	
				6	262.6	감)262.6	-	
				7	262.4	감)262.4	-	
				8	261.2	감)261.2	-	

가 구				회 지				비 고
번 호	면 적(m ²)			번 호	면 적(m ²)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8	5,419.2	감)5,419.2	-	9	263.6	감)263.6	-	
				10	275.5	감)275.5	-	
				11	289.7	감)289.7	-	
				12	281.7	감)281.7	-	
				13	273.6	감)273.6	-	
				14	275.8	감)275.8	-	
				15	275.7	감)275.7	-	
				16	275.8	감)275.8	-	
				17	276	감)276	-	
				18	276.4	감)276.4	-	
				19	269.6	감)269.6	-	
				20	269.6	감)269.6	-	
9	4867.5	감)4,867.5	-	1	742.3	감)742.3	-	
				2	390.5	감)390.5	-	
				3	304.1	감)304.1	-	
				4	307.5	감)307.5	-	
				5	291.7	감)291.7	-	
				6	298.8	감)298.8	-	
				7	314.4	감)314.4	-	
				8	313.4	감)313.4	-	
				9	306.1	감)306.1	-	
				10	312.4	감)312.4	-	
				11	306.0	감)306.0	-	
				12	410.9	감)410.9	-	
				13	569.4	감)569.4	-	

나) 녹지용지(변경)

가 구				회 지				비 고
번 호	면 적(㎡)			번 호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15	1,200.0	감)1,200.0	-	1	1,200.0	감)1,200.0	-	•햇살공원
13	1,886.2	-	1,886.2	2	1,444.1	-	1,444.1	•중앙광장

다) 공공시설용지(변경)

가 구				회 지				비 고
번 호	면 적(㎡)			번 호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10	2,787.2	감)2,787.2	-	1	2,787.2	감)2,787.2	-	•커뮤니티센터
11	651.0	감)651.0	-	1	651.0	감)651.0	-	•마을하수처리장
12	666.0	감)666.0	-	1	666.0	감)666.0	-	•주차장
13	1,886.2	-	1,886.2	1	442.1	-	442.1	
14	2,144.0	감)813.0	1,331.0	1	2,144.0	감)813.0	1,331.0	•문화시설

■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1) 총괄조서(변경)

가 구 및 획지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구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증65,728.3	65,728.3	
숙박 용지	-	⑤ ~ ⑨	-	-	증21,889.8	21,889.8	숙박시설, 근생시설, 휴게음식점
녹지 용지	-	⑮ - 1	-	-	증1,200.0	1,200.0	햇살공원
	-	-	-	-	증28,914.8	28,914.8	일반녹지
공공 시설 용지	-	⑩ - 1	-	-	증2,787.2	2,787.2	커뮤니티센터
	-	⑪ - 1	-	-	증651.0	651.0	마을하수처리장
	-	⑫ - 1	-	-	증660.0	660.0	주차장
	-	-	-	-	증9,625.5	9,625.5	도로, 보행자도로

2)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숙박용지(변경)

가 구				획 지				비 고
번 호	면 적(㎡)			번 호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숙박용지	-	증21,927.3	21,927.3	-	-	증21,927.3	21,927.3	
⑤	-	증1,976.5	1,976.5	1	-	증319.6	319.6	
				2	-	증321.7	321.7	
				3	-	증315.8	315.8	
				4	-	증321.4	321.4	
				5	-	증333.7	333.7	
				6	-	증364.3	364.3	
⑥	-	증4,343.9	4,343.9	1		증331.3	331.3	
				2		증332.1	332.1	
				3		증335.1	335.1	
				4		증347.1	347.1	
				5		증339.6	339.6	
				6		증337.3	337.3	
				7		증328.8	328.8	
				8		증307.5	307.5	
				9		증319.9	319.9	
				10		증330.5	330.5	
				11		증343.2	343.2	
				12		증344.1	344.1	
				13		증347.4	347.4	

가 구				획 지				비 고
변 호	면 적(㎡)			변 호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7	-	증)5,282.7	5,282.7	1	-	증)267.8	267.8	•필지 분할은 불허하 며, 2필지 이상의 합 벽건축 가능
				2	-	증)267.5	267.5	
				3	-	증)262.9	262.9	
				4	-	증)266.3	266.3	
				5	-	증)268.9	268.9	
				6	-	증)270.7	270.7	
				7	-	증)275.7	275.7	
				8	-	증)270.9	270.9	
				9	-	증)271.2	271.2	
				10	-	증)265.3	265.3	
				11	-	증)262.7	262.7	
				12	-	증)254.5	254.5	
				13	-	증)266.1	266.1	
				14	-	증)257.5	257.5	
				15	-	증)259.8	259.8	
				16	-	증)257.6	257.6	
				17	-	증)256.5	256.5	
				18	-	증)257.5	257.5	
				19	-	증)255.2	255.2	
				20	-	증)268.1	268.1	
8	-	증)5,419.2	5,419.2	1		증)267.8	267.8	
				2		증)267.7	267.7	
				3		증)267.7	267.7	
				4		증)263.5	263.5	
				5		증)263.3	263.3	
				6		증)262.6	262.6	
				7		증)262.4	262.4	
				8		증)261.2	261.2	
				9		증)263.6	263.6	
				10		증)275.5	275.5	
				11		증)289.7	289.7	
				12		증)281.7	281.7	
				13		증)273.6	273.6	
				14		증)275.8	275.8	
				15		증)275.7	275.7	
				16		증)275.8	275.8	
				17		증)276	276	
				18		증)276.4	276.4	
				19		증)269.6	269.6	
				20		증)269.6	269.6	

가 구				획 지				비 고
번 호	면 적(m ²)			번 호	면 적(m ²)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9	-	증)4,867.5	4,867.5	1	-	742.3	742.3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대지분할 가능선에 의한 필지 분할 허용
				2	-	390.5	390.5	
				3	-	304.1	304.1	
				4	-	307.5	307.5	
				5	-	291.7	291.7	
				6	-	298.8	298.8	
				7	-	314.4	314.4	
				8	-	313.4	313.4	
				9	-	306.1	306.1	
				10	-	312.4	312.4	
				11	-	306.0	306.0	
				12	-	410.9	410.9	
				13	-	569.4	569.4	

나) 녹지용지(변경)

가 구				획 지				비 고
번 호	면 적(㎡)			번 호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15	-	증)1,200.0	1,200.0	1	-	증)1,200.0	1,200.0	•햇살공원

다) 공공시설용지(변경)

가 구				획 지				비 고
번 호	면 적(m ²)			번 호	면 적(m ²)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10	-	증2,787.2	2,787.2	1	-	증2,787.2	2,787.2	•커뮤니티센터 •필지분할 불허
11	-	증651.0	651.0	1	-	증651.0	651.0	•마을하수처리장
12	-	증660.0	660.0	1	-	증660.0	660.0	•주차장

라. 건축물에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주거시설 결정(변경) 조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4]	용 도	허용용도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40% 이하
	허용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3층이하
	형 태		•경사지붕 (권장)
	색 채		•벽체:열은갈색 / 지붕:갈색 (권장)
	건축선		-
[14]-1	용 도	허용용도	•계획관리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10호의 문화·집회시설, 교육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40% 이하
	허용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3층 이하
	형 태		•경사지붕 (권장)
	색 채		•벽체:연한미색 / 지붕:연한하늘색 (권장)
	건축선		-

2) 숙박시설 결정(변경) 조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5~8]	용 도	허용용도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5호의 숙박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40% 이하
	허용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3층이하
	형 태		•경사지붕 (권장)
	색 채		•벽체:열은갈색 / 지붕:갈색 (권장)
	건축선		-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9]	용 도	허용용도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5호의 숙박 시설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4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40% 이하
	허용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3층이하
	형 태		•경사지붕 (권장)
	색 채		•벽체:열은갈색 / 지붕:갈색 (권장)
	건축선		-

3) 공공시설 결정(변경) 조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0]-1	용 도	허용용도	•계획관리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4호의 제1·2종근린생활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40% 이하
	허용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3층이하
	형 태		•경사지붕 (권장)
	색 채		•벽체:연한미색 / 지붕:연한하늘색 (권장)
	건축선		-
[11]-1	용 도	허용용도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하수도 중 농어촌지역에 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공공 하수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40% 이하
	허용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1층 이하
	형 태		•경사지붕 (권장)
	색 채		•벽체:열은갈색 / 지붕:갈색 (권장)
	건축선		-

보성군 고시 제2016-3호

보성 군관리계획(교통시설 : 도로)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보성군 조성면 조성리 일원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군계획시설(도로 : 소로2-104호선 및 소로2-105호선)의 경미한 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경미한 사항의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16. 2. 4

보성군수

1. 보성 군관리계획(교통시설 : 도로) 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 다음조서
2. 보성 군관리계획(교통시설 : 도로) 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도면 : 게재생략
3. 관계 도서는 보성군청 도시경관과(☎061-850-5575)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등에게 보입니다.

보성 군관리계획(교통시설 : 도로)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조서

1.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

○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04	8.0	국지 도로	305	조성면 조성리 중로2-12	조성면 조성리 중로2-105	일반 도로		1980.05.09	조성
변경	소로	2	104	8.0	국지 도로	305	조성면 조성리 중로2-12	조성면 조성리 중로2-105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105	8.0	국지 도로	216	조성면 조성리 중로2-1	조성면 조성리 중로3-2	일반 도로		2003.07.12	조성
변경	소로	2	105	8.0	국지 도로	216	조성면 조성리 중로2-9	조성면 조성리 중로3-14	일반 도로		"	

○ 군계획시설(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2-104	소로 2-104	○ 도로 선형변경	○ 소로 2-104호선내 일부 지적 불부합 지역에 대하여 군관리계획 (교통시설-도로) 경미한 변경으로 선형 변경(결정) 하고자 함.
소로 2-105	소로 2-105	○ 도로 선형변경	○ 소로 2-105호선내 일부 지적 불부합 지역에 대하여 군관리계획 (교통시설-도로) 경미한 변경으로 선형 변경(결정) 하고자 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6-8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 등 일괄 공포 공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5조 규정에 의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임시회(2016. 1. 28.)에서 의결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 등 9건을 공포하고 다음과 같이 일괄 공고합니다.

2016. 2. 4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1. 공포사유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물품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등 9건 의결에 따른 공포
2. 공 포 일 : 2016. 2. 4.
3. 공포문 및 공포전문 : 다음

제81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임시회(2016. 1. 28.)에서 의결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16. 2. 4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권오봉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규정 제177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사무전결처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단위사무별 전결권 구분

소관별	위 임 사 무 명	담당자	관과팀장	부소장	본부장	청장
지 역 개 발 과	6. 택지개발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다. 성황국제비즈니스파크, 신대배후단지, 광양복합업무단지, 웰빙카운티단지, 선월하이파크단지, 조성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4) 토지의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	기안				○
산 단 조 성 과	1. 일반산업단지(도시 첨단산업단지 포함) 개발 실시 계획					
	가. 실시계획의 승인	기안				○
	나.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기안				○
	7. 울촌산단 조성사업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다. 울촌제1·2·3산단 토지의 양도· 양수에 관한 사항	기안				○
	16. 세풍산단 조성사업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라. 토지의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	기안				○
	19. 해룡산단 조성사업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라. 토지의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	기안				○
하 동 사 무 소	109. 하동지구 조성사업 추진					
	라. 토지의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	기안				○

제81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임시회(2016. 1. 28.)에서 의결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16. 2. 4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권오봉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규정 제178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규정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복무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⑭ 장기재직공무원은 원 소속기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거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1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임시회(2016. 1. 28.)에서 의결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16. 2. 4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권오봉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규정 제179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만 57세”를 “60세”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무기계약근로자 정수표(제6조 관련)

부 서 별	계	단 순 노 무 원				환경미화원
		소계	단순잡역 조무인부	현장공사 ·작업 등 현업인부	시설물· 장비유지 관리인부	
계	11	10	10			1
홍보담당관	1	1	1			
행정지원과	3	3	3			
기획예산과						
기업지원과	1	1	1			
건축환경과	1					1
민원봉사과						
개발정책과	1	1	1			
지역개발과						
산단조성과						
국내유치부	2	2	2			
해외유치부	1	1	1			
하동사무소	1	1	1			

제81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임시회(2016. 1. 28.)에서 의결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16. 2. 4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권오봉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규정 제180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5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제10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1(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비밀유지의무)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부친 안건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의과정에서 얻은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입찰 및 계약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1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임시회(2016. 1. 28.)에서 의결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물품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16. 2. 4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권오봉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규정 제181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물품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관서당경비”를 “일상경비”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9조 제목 및 제1항 중 “관서당경비”를 “일상경비”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7호”를 “6호”, “8호”를 “7호”, “9호”를 “8호”로 하고, 8호중 “제1호 내지 제7호에”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로 한다.

제26조제7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별표1] 2. 품종구분 기준 (1)비품 ②항 중 “지방자치단체장”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별표2] 기증 중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를 “물품을 기증받는 경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담당”을 “과(관·팀)장”, “과장”을 “부(소)장”, “국장”을 “본부장”, “조합장”을 “청장”으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과장”을 “과(관·팀)장”으로, “물품출납원”을 “물품관리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물품의 품종·상태구분

1. 물품의 분류

- (1) 비 품 :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 (2) 소모품 :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품종구분 기준

(1) 비 품

- 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 ② 기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지정한 물품

(2) 소모품

- ① 한번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 ② 내용연수가 1년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물품
(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 ③ 다른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
(예 :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 ④ 내용연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가 1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3. 물품상태 분류기준

- (1) 신 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제품
- (2) 중 고 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 (3)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 (4)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별표 2]

물품출납이동부의 정리구분

구 분	구 분 내 역
구 입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양 수	물품을 양수하는 경우
차 용	물품을 차용하는 경우
생 산	내부 또는 외부에서 물품을 제작하는 경우
편 입	공유재산을 물품에 편입하는 경우
부 생	물품을 부생하는 경우
양 도	물품을 양도하는 경우
대 여	물품을 대여하는 경우
공유재산편입	물품을 공유재산에 편입하는 경우
매 각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해 체	물품을 해체하는 경우
폐 기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망 실	망실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반 납	사용중인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와 대여한 물품 또는 임차한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
관 급	물품을 관급하는 경우
자연감모	자연감모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관리전환	물품관리권을 이동하는 경우
분류전환	물품을 분류 전환하는 경우
사용전환	동일물품 관리관 사항 분임물품출납원 상호간의 이동
공 차	물품을 일시적으로 공용 차용하는 경우
무상양여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기 증	물품을 기증받는 경우
잡 건	위의 구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동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물품 매입(수리·제조)품의 및 요구서

건명 :					담당자	과(관·팀)장	부(소)장	본부장	청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매입 제조 합니다.					물 품 관 리 관				
					물 품 출 납 원				
					분임물품출납원				
물품(매입·수리·제조)명세									
물품분류 번 호	품 목		규 격	단 위 명 칭	수 량	소요경비 추 정 액		용 도	
위 물품을 월 일까지 [납품 수리 제조]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관·팀)장 성명 (인) 재 무 관 귀 하									

- 주 : 1. 본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의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부만 작성하여 회계 주무과에 제출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반납 및 인수증
(일반회계용)

수신 : ①청 구 번 호 :
발신 : ②출급증빙서번호 :

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20 년 월 일							주 관 과	과(관·팀)장	분임물품 출납원	계
④ 일련 번호	⑤ 정부물품 분류번호	⑥ 품명	⑦ 규격	⑧ 단위	⑨ 반납 수량	⑩ 반납 사유	⑪ 반납품 상 태	⑫ 인수량	⑬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계	
							인	인		
⑮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분임물품출납원		인	
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관		출납부등재	
							인			

제81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임시회(2016. 1. 28.)에서 의결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용차량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16. 2. 4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권오봉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규정 제182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용차량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용차량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용차량관리규정”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용차량관리규정”으로 한다.

제1조, 제5장, 제35조제1항 중 “관용”을 “공용”으로 한다.

[별표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제4조관련)을 별첨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와, [별지 제7호서식] 중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관용차량관리규정”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공용차량관리규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제4조관련)

차 종	차 형	배 정 대 상	내구연한
승 용 (전 용)	대형승용차 (배기량 2,000CC 이상)	◦ 본 청 (청장전용)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 년간 또는 총주행거리 12만 km이상 (최단운행연한 8년 이상)
승 용 (의전용)	대형승용차 (배기량 2,000CC 이상)	◦ 본 청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간 또는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 (최단운행연한 8년 이상)
승 용 (업무용)	중형승용차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	◦ 본 청 ◦ 단위부서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간 또는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 (최단운행연한 8년 이상)
	다목적승용차 (4륜 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 등을 갖추 고 험로운행이 용이한 차량)	◦ 본 청 ◦ 단위부서	
	소형·경형승용차 (배기량 1,600CC 미만)	◦ 본 청 ◦ 단위부서	
승합용	대형승합차 (승차정원 36인 이상 차량)	◦ 본 청 ◦ 단위부서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8년간 (최단운행연한 8년 이상)
	중형·소형·경형승합차 (승차정원 16인이상 35인 이하 차량)	◦ 본 청 ◦ 단위부서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간 또는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 (최단운행연한 8년 이상)
화물용	대형·중형·소형·경형화물차	◦ 본 청 ◦ 단위부서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간 또는 총주행거리 12만km 이상 (최단운행연한 8년 이상)
특수용	특수용 자동차	◦ 본 청 ◦ 단위부서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간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비고)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1 제1호에 의한다.

제81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임시회(2016. 1. 28.)에서 의결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16. 2. 4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권오봉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규정 제183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유재산관리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다음연도 예산편성전”을 “회계연도 시작 50일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편성하기”를 “의결하기”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8항”을 “제13조제9항”으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0이상”을 “5이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1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임시회(2016. 1. 28.)에서 의결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16. 2. 4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권오봉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규정 제184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심의·자문”을 “자문”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3조제6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연1회”를 “연2회”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1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임시회(2016. 1. 28.)에서 의결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규정 폐지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16. 2. 4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권오봉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규정 제185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규정 폐지규정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